

# 해외 보험동향

| 총괄

한상용 (연구위원)

| 해외 보험동향

일본

이상우 (수석연구원)

중국, 홍콩, 대만

이소양 (연구원)

동남아, 중남미

장윤미 (연구원)

북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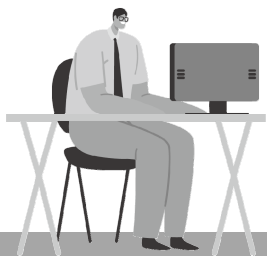
손지영 (연구원)

영국, 유럽

이연지 (연구원)

독일

이승주 (연구원)



08<sub>호</sub>

[ 2021 겨울호 ]



## 목 차

### I. 해외 보험산업 제도 현황

|                                                                                  |    |
|----------------------------------------------------------------------------------|----|
| 1. 미국 No Surprise Act(NSA)의 발효 배경과 주요 내용                                         | 1  |
| 2. 호주의 은퇴소득 약정안(Retirement Income Covenant) 입법 초안 발표                             | 4  |
| 3.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Eidgenössische Finanzmarktaufsicht; FINMA),<br>그린워싱 예방 및 퇴치 지침 발표 | 6  |
| 4. 독일 차기 연방정부의 연금개혁안                                                             | 9  |
| 5. 영국 비작업장연금(NWP)의 디폴트옵션 도입 및 소비자경고 의무화 제안                                       | 11 |
| 6. 중국의 생명보험 판매규제 강화와 영향                                                          | 13 |
| 7. 일본 경제산업성의 DX(Digital Transformation) 우수 보험회사 선정                               | 16 |

### II. 해외 보험산업 시장 현황

|                                                 |    |
|-------------------------------------------------|----|
| 1. 미국 보험산업의 M&A 동향                              | 19 |
| 2. 호주의 사이클론 피해에 대한 파라메트릭 보험상품(상품명: Redicova) 개발 | 22 |
| 3. 영국 LV의 탈상호화 움직임과 계약자 보호 논란                   | 24 |
| 4. 대만 마이크로인슈어런스(Microinsurance)의 현황과 최근 동향      | 28 |
| 5. 일본의 치매 예방 보험상품 개발 확산 현황                      | 30 |

|                           |    |
|---------------------------|----|
| [특집] 해외 보험산업의 고령화 대응: 호주편 | 35 |
|---------------------------|----|



# I

## 해외 보험산업 제도 현황

### 1. 미국 No Surprise Act(NSA)의 발효 배경과 주요 내용

- 미국 보건복지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의 보고서<sup>1)</sup>에 따르면 민간 건강보험에 가입한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예상치 못한 의료비 청구(Surprise billing)를 경험하고 있음<sup>2)</sup>
  - 2018년 HSS 산하 계획평가국(The Assistant Secretary for Planning and Evaluation; ASPE)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미국 민간 건강보험 가입 성인 기준)의 57%가 예상치 못한 의료비 청구를 경험한 바 있다고 응답함
    - 2020년에 청구된 예상치 못한 의료비를 예로 들면, 평균적으로 마취과 전문의가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는 \$1,200, 수술 보조인(Surgical assistants) 비용은 \$2,600, 출산 관련(Childbirth-related care) 비용은 \$750 이상이 청구되었음
- 일명 ‘Surprise billing’은 보험 계약자가 보험회사와 계약된(In-network) 의료제공자가 아닌 의료제공자(Out-network provider)에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경우 받게 되는 잔액 청구(Balance billing)를 의미하며, 주로 민영 건강보험에서 발생하고 있음
  - 잔액 청구란 보험 계약자가 보험회사와 계약되지 않은(Out-network) 의료제공자에게 서비스를 받은 경우, 의료제공자가 의료비용과 허용 금액<sup>3)</sup>의 차액을 보험 계약자에게 청구하는 것을 의미함<sup>4)</sup>
  - Surprise billing은 보험 계약자가 Out-network 의료제공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응급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보험회사의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계약자가 Out-network 의료제공자를 In-network 의료제공자로 오인할 경우에도 발생함
  - 미국 회계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에 따르면 2017년 민영 보험에 가입한 보험 계약자가 받은 항공 구급차 수송 서비스의 69%가 Out-network에 의해 제공되어 추가적인

1) ASPE(2021. 11. 22), “Evidence on Surprise Billing: Protecting Consumers with the No Surprises Act”

2) 미국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s://www.hhs.gov/>)

3) 허용 금액(Allowable amount)이란 보장되는 의료 서비스에 한하여 보험회사에서 보장하는 최대 지급 금액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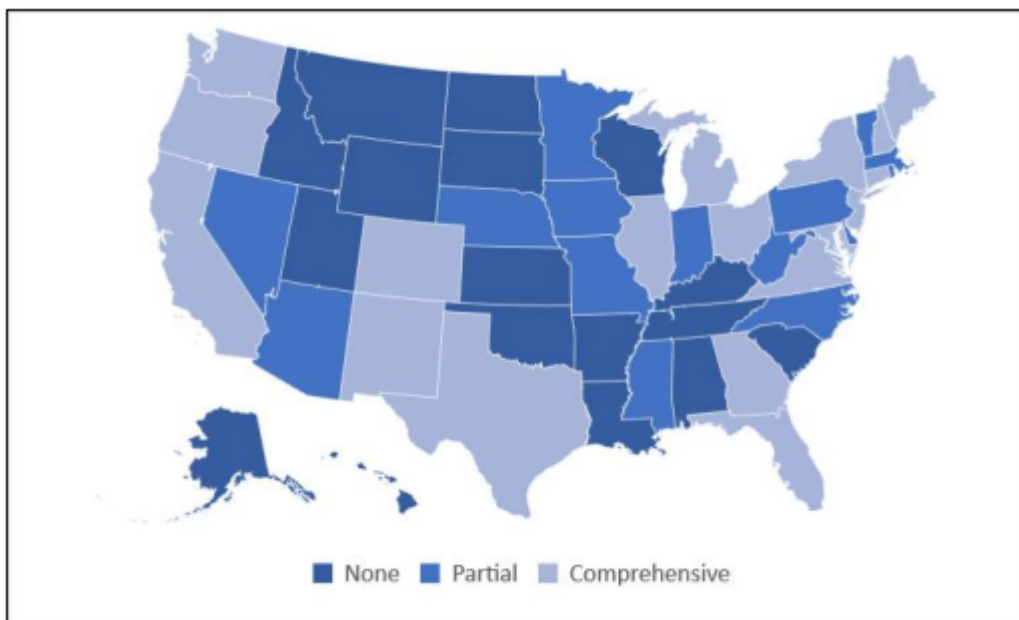
4) <https://www.healthcare.gov/>

비용이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항공 구급차 수송 서비스가 대부분 고액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계약자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됨

○ 미국 내 여러 주(州)에서는 주법이나 규정을 통해 잔액 청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2021년 2월 기준 ASPE가 제시한 Surprise billing 대응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는 법안을 갖춘 주는 총 18개, 일부를 충족하는 주는 총 15개로 파악됨

- ASPE가 제시한 주요 기준으로는 ① 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와 PPO(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를 포함한 모든 건강보험 상품에 잔액 청구 금지 규정을 적용할 것, ② 잔액 청구로부터 소비자(보험 계약자)를 보호할 것, ③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거나 보험회사와 계약자 간 분쟁 발생 시 분쟁 해결을 위한 프로세스를 마련할 것 등이 있음
- 분쟁 사례에서 지불 금액을 결정하는 방식과 분쟁 해결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방식은 법률 또는 규정에 따라 기준을 설정하거나 독립적인 제3자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프로세스를 수립하는 등 주마다 상이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그림 1〉 주별 Surprise billing 대응 현황



주: ASPE가 제시한 기준 전부를 만족한 주를 Comprehensive, 일부를 만족한 주를 Partial, 기준을 만족시키지 않은 주를 None으로 표시함

자료: Hoadley, Kona, and Lucia(2020. 4. 29), "States Can Prevent Surprise Bills for Patients Seeking Coronavirus Care," To the Point (blog), Commonwealth Fund

- 그러나 잔액 청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정부의 조치는 계약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 대부분이 주보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임<sup>5)</sup>
  - 미국 내 고용주가 지원하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의 67%는 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러한 자가 보험은 주정부의 감독 대상이 아닌 연방 감독 대상으로 주보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No Surprise Act(NSA)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주별 정책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고안된 연방 정부 차원의 법적 조치로 2022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임
- NSA가 적용되는 서비스는 응급 의료 서비스, 응급 상황 이후의 애프터케어 서비스, In-network 시설에서 제공되는 비응급 서비스 등이 있음
  - NSA가 적용되는 응급 의료 서비스는 병원의 응급실, 응급치료 제공 허가를 받은 긴급 치료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응급 서비스를 의미하며, 항공 구급차 수송(응급 및 비응급)을 포함함<sup>6)</sup>
  - 응급 상황 이후의 애프터케어 서비스는 응급 서비스를 받은 이후 병원에서 제공되는 치료 및 이송 비용을 말함
  - In-network 시설에서 제공되는 비응급 서비스는 In-network에 포함된 시설이라 하더라도 Out-network 의료진이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Out-network 사업자가 제공하는 이송 서비스 등의 비응급 서비스를 의미함
- NSA가 적용되는 서비스에 대해 Out-network 의료제공자는 계약자에게 In-network 의료 서비스를 받았을 경우 분담할 비용 이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00의 벌금이 부과됨<sup>7)</sup>
  - 오늘날 대부분의 Out-network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은 환자에게 전체 비용을 직접 청구하고, 환자는 의료비용을 납부한 뒤에 보험회사에 이를 청구하여 환급받고 있으나, NSA가 적용되는 내년부터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환자의 보험가입 상태를 확인한 후 보험회사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함
- 향후 연방 및 주 관련 기관은 Surprise billing으로부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NSA에 대한 감독 및 집행 업무를 수행할 예정임

5) Adler, L.(2019. 10. 24), "Experience with New York's Arbitration Process for Surprise Out-of-Network Bills", USC-Brookings Schaeffer Initiative for Health Policy

6) KFF(2021. 12. 10), "No Surprises Act Implementation: What to Expect in 2022"

7) KFF(2021. 12. 10), "No Surprises Act Implementation: What to Expect in 2022"

## 2. 호주의 은퇴소득 약정안(Retirement Income Covenant) 입법 초안 발표<sup>8)</sup>

- 호주에서는 대다수의 은퇴자가 퇴직연금 운영에 관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음<sup>9)</sup>
  - 은퇴자는 은퇴 시점<sup>10)</sup>에 생활수준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하고 복잡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이는 일부 은퇴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함
    - 은퇴는 고령자 복지제도(Aged Care), 각종 세금 문제와 주택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여러 절충안이 필요함
  - 호주는 비교적 젊은 국가로 현재까지 은퇴자의 숫자가 많지 않아 은퇴자에 대한 금융상품이나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발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왔음<sup>11)</sup>
  - 퇴직연금 수탁자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은퇴자의 퇴직연금 상품에 관한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해 왔으나, 여전히 장수위험 관리나 퇴직연금 인출의 유연성 등에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 2021년 9월 호주 정부는 은퇴자의 은퇴소득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퇴직연금 수탁자에게 일정 의무를 부과한 은퇴소득 약정안 입법 초안을 발표함<sup>12)</sup>
  - 2018년 호주 연방예산심의처는 은퇴소득 약정안을 최초로 언급하였고, 이후 2021년 9월 말 호주 재무부가 이 같은 안을 구체화하여 은퇴소득 약정안 입법 초안을 발표함
  - 은퇴소득 약정안이란 퇴직연금 수탁자로 하여금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은퇴 후 소득 목표를 파악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 문서화할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임
    - 동 법안은 퇴직연금 수탁자로 하여금 퇴직연금 가입자의 은퇴소득 전략을 설계하고 정기적으로 이를 점검하여 가입자의 은퇴소득 목표 달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법안에 따르면 퇴직연금 수탁자는 은퇴자의 ① 은퇴소득 최대화, ② 은퇴소득의 지속가능성 및 안정성에 대한 위험 관리, ③ 퇴직연금의 유연한 사용을 목표로 은퇴소득 전략을 설계해야 함
  - 은퇴소득 최대화는 노령연금이나 기타 사회보장제도와 같은 소득에 대한 지원금을 모두 고려하여 은퇴 후 소득을 최대화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임
  - 은퇴소득 지속가능성 및 안정성에 대한 위험 관리는 퇴직연금 적립 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시장(투자 및

8) <https://treasury.gov.au/consultation/c2021-209553>

9) <https://www.asiainsurancereview.com/News/View-NewsLetter-Article/id/77435/Type/eDaily/Australia-ASIC-releases-guide-to-implement-new-add-on-insurance-deferred-sales-model>

10) 은퇴란 정해진 연령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가 건강상의 이유, 재정적인 이유, 노령연금 수급 조건 등의 이유로 개인마다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정의됨

11) <https://www.ricewarner.com/using-retirement-funds-more-efficiently/>

12) <https://treasury.gov.au/consultation/c2021-188347>

인플레이션) 및 장수 위험을 고려하여 은퇴자금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임  
- 이 밖에도 퇴직연금 수탁자는 가입자의 보험가입 접근성, 건강 악화 및 인지기능 저하와 관련된 리스크를 고려해야 함

- 퇴직연금의 유연한 사용은 건강에 대한 지출이나 신차 구매와 같은 소비자 니즈에 맞춰 퇴직연금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의미함

○ 퇴직연금 수탁자는 가입자의 은퇴소득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퇴직상품을 개발·제공하며 자율재량에 따라 가입자에게 알맞은 은퇴소득 전략을 제시해야 함

- 퇴직연금 수탁자는 은퇴자의 퇴직연금 상품을 평가·점검하고, 퇴직연금 인출 방식, 퇴직연금 계산과 은퇴 시 예상 소득 정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퇴직연금 수탁자는 가입자 전체를 포괄하는 일반적 은퇴소득 목표 전략을 취할 것인지 가입자의 집단별 속성에 맞는 동질집단(Cohort)별 전략을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음
  - 이는 가입자의 개별 니즈를 모두 상세히 분석하여 맞춤형 개별 금융자문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금융자문과 구분됨

○ 퇴직연금 수탁자는 퇴직연금 가입자의 노령연금 수급 조건을 확인하고 이 같은 데이터에 근거하여 은퇴소득 전략을 도출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발표해야 함

- 퇴직연금 수탁자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노령연금 수급 대상인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의 기타 소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퇴직연금 수탁자는 노령연금 수급자격 조건에 관한 기초자료와 가입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가입자의 혼인 여부, 모기지 사용 여부, 기타 평가 가능한 자산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퇴직연금 수탁자는 퇴직연금 가입자를 위한 은퇴소득 전략을 도출하고 이러한 전략을 문서화해 가입자가 공개적으로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 퇴직연금 수탁자의 웹사이트를 통해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호주 건전성감독청(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APRA),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ASIC) 및 호주 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은 은퇴소득 약정안에 대한 감독기관이며, 이들 기관은 퇴직연금 수탁자와 은퇴소득 전략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임

- 상기 감독기관은 퇴직연금 수탁자에 대한 평가를 연 단위로, 은퇴소득 전략에 관한 평가는 3년 단위로 수행할 예정임<sup>13)</sup>

13) <https://www.allens.com.au/insights-news/insights/2021/09/retirement-income-covenant-one-step-closer-to-reality/>

- 동 법안 통과 시 퇴직연금 수탁자는 가입자에게 맞춤형 전략을 제공하고 은퇴자의 퇴직 후 생활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sup>14)</sup>
  - 동 안이 법안을 통과할 경우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퇴직연금 수탁자는 2022년 상반기 이전 은퇴소득 전략을 마련해야 함
  - 과거 퇴직연금 수탁자가 퇴직연금 적립금 운영 방식에 관해 한정된 역할을 담당한 것과 달리, 향후에 퇴직연금 수탁자는 가입자의 은퇴 전 단계에서 이들의 소득을 최대화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일각에서는 은퇴소득 전략 개발에 필요한 시간이 촉박하고 세부적인 시행 계획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음
  - Deloitte는 퇴직연금 가입자의 재정 상황 파악을 위한 정보 수집, 현행 금융자문법과의 복잡성 문제, 퇴직연금 가입자의 동질집단에 관한 정의, 은퇴소득 전략의 이행을 위한 시행계획 등의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함<sup>15)</sup>
  - 일부 퇴직연금 수탁자는 2022년 7월 1일까지 은퇴소득 전략 개발을 완료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촉박하고 따라서 준비기간으로 최대 2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임
- 호주 퇴직연금 수탁자는 은퇴소득 약정안 법안 통과 후 관련 세부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임
  - 동 법안이 통과되면 호주 건전성감독청(APRA)은 은퇴소득 약정안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임
  - 퇴직연금 수탁자는 은퇴소득 약정안의 법안 통과 이후 가입자에 대한 교육 방안이나 금융상품 자문과 같은 부분에서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3.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Eidgenössische Finanzmarktaufsicht; FINMA), 그린워싱 예방 및 퇴치 지침 발표

- 최근 ESG 및 지속가능한 투자펀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한편, 글로벌 금융회사의 ‘그린워싱 (Green Washing)’<sup>16)</sup>에 대한 논란이 심화되고 있음

14) <https://www.asiainsurancereview.com/News/View-NewsLetter-Article/id/77247/Type/eDaily/Australia-Govt-used-of-watering-down-reforms-by-allowing-exemptions>

15) <https://www2.deloitte.com/au/en/pages/financial-services/articles/retirement-income-covenant.html>

16) 그린워싱이란 녹색(Green)과 세탁(White washing)의 합성어로, 기본적인 환경 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금융 상품을 마치 환경친화적인 것처럼 꾸며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관행을 뜻함

- 2021년 약 38조 달러에 이르는 글로벌 ESG 자산은 2025년 53조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동 규모는 전 세계 운용자산의 약 1/3을 차지함<sup>17)</sup>
- 이와 같이 ESG 투자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ESG 투자규모 허위공시 등 그린워싱 논란에 휩싸이며 ESG 투자 시장에 대한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힘
  - 도이체방크의 자회사 DWS자산운용은 전체 운용자산 중 절반 이상을 ESG 기준에 따라 투자했다고 주장했으나, DWS 전직 임원의 폭로로 인해 이는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허위공시 의혹이 제기됨<sup>18)</sup>
  - DWS자산운용은 현재 독일 연방금융감독청(BaFin)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허위공시 의혹 직후 주가가 13% 이상 급락하는 등 기업 평판이 심각하게 훼손됨
- 또한 글로벌 보험회사들은 스스로 수립한 친환경 기업 정책과 모순되는 투자 활동과 보험 상품 판매 등으로 인해 그린워싱에 대한 비판에 직면함
  - Lloyd's는 최근 지속가능한 친환경 미래를 위한 기후 액션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지만,<sup>19)</sup> 캐나다 트랜스 마운틴의 타르샌드 파이프라인 확장, 바하마의 석유 시추 프로젝트 등을 보장하고 있음
  - 동경해상은 자사 기후 전략을 통해 석탄 화력 프로젝트에 대한 보험 판매와 투자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으나,<sup>20)</sup> 석유 및 가스 부문과 관련하여 전 세계 Top10 보험회사에 속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음<sup>21)</sup>

○ 이에 대해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이하, 'FINMA'라 함)은 소비자 및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회사의 평판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그린워싱 예방 및 퇴치를 위한 지침을 발표함<sup>22)</sup>

- 해당 지침은 ① 집합투자계획에 대한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② 지속가능성 기금관리기관의 조직구조, ③ 지속가능성 관련 상품판매 시점에서의 행동규칙 등을 골자로 함

17) Bloomberg(2021. 2. 23), "ESG assets may hit \$53 trillion by 2025, a third of global AUM"

18) WSJ(2021. 8. 25), "U.S. Authorities Probing Deutsche Bank's DWS Over Sustainability Claims"

19) Lloyd's(2021), "Insuring a sustainable, greener future"

20) Tokio Marine(2020), "Tokio Marine: Our Climate Strategy"

21) Insureourfuture(2020. 6), "Time for the insurance industry to unfriend oil and gas"

22) FINAMA(2021. 11), "Prävention und Bekämpfung von Greenwashing"

〈표 1〉 FINMA의 그린워싱 예방 및 퇴치 지침

| 기준           | 내용                                                                                                                                                                                                                                                                                                                                                                                                                                                                                                                                                                                                                                                                             |
|--------------|--------------------------------------------------------------------------------------------------------------------------------------------------------------------------------------------------------------------------------------------------------------------------------------------------------------------------------------------------------------------------------------------------------------------------------------------------------------------------------------------------------------------------------------------------------------------------------------------------------------------------------------------------------------------------------|
|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 <p>금융기관이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제공할 때, 아래와 같은 경우 그린워싱 의심사례로 간주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합투자계획에서 지속가능성을 암시하지만 실제 투자 전략이나 정책이 이를 추구하지 않는 경우</li> <li>• 지속가능성 달성을 위한 접근방식(ESG 기준 준수, 포트폴리오 편입 등)을 제시했지만 실제로 언급된 접근방식을 따르지 않은 경우</li> <li>• 집합투자계획은 지속가능성과 관련되어 있지만 투자정책의 접근방식이 지속가능성 추구하고 불일치하거나 모순되어, 투자자의 예상과 다른 투자가 진행되는 경우</li> <li>• 투자 전략이나 정책이 통상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지속가능성을 포함한다고 정당화하지만, 구체적인 지속가능성 요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li> <li>• ‘영향(Impact)’ 혹은 ‘탄소 제로(Zero Carbon)’ 등과 같은 용어를 명시했지만 이로 인한 효과나 절감 수준을 측정할 수 없거나 검증하지 못할 경우</li> <li>• 집합투자계획은 지속가능성과의 관련성을 주장하지만, 실제 투자설명서에 해당 투자 전략 및 정책이나 투자 의사결정과정에 통합되는 지속가능성 기준에 대해 지극히 일반적인 정보가 기재됐거나, 아예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li> </ul> |
| 기금관리기관의 조직구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버넌스, 감독 및 통제를 담당하는 기관은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전략을 채택해야 함</li> <li>• 투자결정과정은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기준을 통합하고 준수해야 하며,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리스크는 전통 투자 리스크와 함께 독립변수로서 검증해야 함</li> <li>• 관리, 통제, 감독 및 운영을 담당하는 기관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함</li> <li>• 데이터 제공자의 평가와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외부 지속가능성 관련 데이터 및 분석, 도구 및 평가방식을 적절하게 선택하고 활용해야 함</li> </ul>                                                                                                                                                                                                                                                                                                                                |
| 상품판매 행동규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품 자문 과정(판매 시점)에서 금융 서비스 제공자는 상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의 설명을 통해 법적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함</li> </ul>                                                                                                                                                                                                                                                                                                                                                                                                                                                                                                                                            |

자료: FINMA(2021. 11. 3), “Prävention und Bekämpfung von Greenwashing”; 해당 지침을 기초로 작성함

## ○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그린워싱을 방지하고 녹색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

- 2021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정(The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SFDR)은 EU 역내 은행, 보험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에 대해 투자대상 기업과 운용 상품의 ESG 정보 공개를 의무화함
  -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정은 현재의 참조기간을 거쳐, 2022년 세부규칙(Regulatory Technical Standards; RTS)이 적용될 예정임
- 2022년 시행 예정인 EU 녹색 분류체계(EU Taxonomy)는 6대 환경목표에<sup>23)</sup> 따라 친환경 경영에 대한 금융기관의 명확한 공시 기준을 제시함

23) EU 녹색 분류체계의 6대 환경목표는 ① 온실가스 감축, ② 기후변화 적응, ③ 수자원 및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호, ④ 순환경제로의 전환, ⑤ 오염방지 및 통제, ⑥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의 보호와 복원임

- 금융 및 보험산업의 친환경 경영 이미지는 소비자와 투자자의 기업 신뢰와 직결되기 때문에 해외 국가들의 그린워싱과 관련한 기준과 규제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4. 독일 차기 연방정부의 연금개혁안

- 지난 2021년 9월 총선 결과로 독일에서는 사회민주당(SPD), 녹색당(Die Grünen), 자유민주당(FDP)으로 구성된 신호등 연립정부<sup>24)</sup>가 출범하였고, 새로운 정부는 연금정책에 대한 변화를 시사함
  - 16년 만에 선거에 승리하여 제1당에 오른 중도좌파 성향의 사회민주당은 녹색당, 자유민주당과 함께 연립정부를 구성함
  - 신호등 연정은 선거연령 하향조정, 최저임금 인상, 대마초 합법화,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진보적 정책안을 발표하였으며, 연금정책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개혁을 예고함
- 신호등 연정은 연정협약서를 통해 입법기간 동안 법정 연금의 소득대체율 48% 및 보험료율 20%를 유지하고, 퇴직 연령을 연장하거나 연금을 삭감하지 않을 것임을 밝힘<sup>25)</sup>
  - 연정은 '세대 간 계약(Generationsvertrag)'에 따라 현재와 미래 세대 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연금 수령액과 연금 기여율을 장기적으로 안정화시키기 위해 법정연금보험에 자금을 조달할 예정임
    - 이를 위해 연정은 2022년 예산에서 100억 유로를 연기금에 편성하고, 연기금이 규정을 준수하여 자본시장에 준비금을 투자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임
    - 더불어 2022년부터 경제 회복과 임금 상승으로 인해 연금수령액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는 '보충계수(Nachholfaktor)'<sup>26)</sup>를 활성화하여 보험료율을 안정화할 예정임
    - 이로 인해 연금인상률은 2.5%로 하향조정되고, 서독은 5.2%에서 2.7%, 동독은 5.9%에서 3.4%의 인상률이 적용될 것으로 보임

24) 독일 연립정부는 각 당을 상징하는 색에 따라 이름을 붙임. 시민당의 상징은 붉은색, 자민당은 노란색, 녹색당은 초록색으로 마치 이 모습이 신호등과 같아 '신호등 연정'이라 칭함

25) SPD, BÜNDNIS 90/DIE GRÜNEN UND FDP(2021. 11), "Mehr Fortschritt wagen Bündnis für Freiheit, Gerechtigkeit und Nachhaltigkeit"

26) 보충계수란 법정연금보험의 연금조정공식의 일부로, 연금을 삭감하지 않으면서도 적절한 보험료율을 유지하기 위해 임금 인상에 비례한 연금 인상률을 약 절반으로 제한하는 계수임. 해당 계수는 2007년 처음 도입되었으나 2018년부터 제대로 활용되지 못해 왔음

○ 또한 리스터(Riester)연금<sup>27)</sup> 등 사적연금 부문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예고함

- 현재 리스터연금은 ① 저소득층의 낮은 가입률, ② 예상을 하회하는 급여수준, ③ 제도운영의 불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sup>28)</sup>
- 신호등 연정은 위와 같은 사적연금 부문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저소득층의 사적연금 가입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이를 위해 새 정부는 옵트아웃(Opt-out) 조건을 갖춘, 효과적이고 비용부담이 적은 공공연기금의 설립과 리스터연금보다 수익률이 높은 개인 투자 상품의 법적 인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
- 다른 한편으로는 리스터연금의 기존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본소득 공제한도를 기존 801유로에서 1,000유로로 상향 조정함

○ 이와 더불어 연정은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자영업자의 퇴직연금가입을 의무화함

- 사적 연금 상품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는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부터 법정 연금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였음

○ 특히 이번 선거전에서 스웨덴의 적립식 개인연금(Premium Pension; PP) 모델<sup>29)</sup>을 지지하는 자유민주당(FDP)이 주식연금(Aktienrente)의 도입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임에 따라, 향후 주식연금의 도입여부에 귀추가 주목됨<sup>30)</sup>

- 자민당은 스웨덴 연금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의 18.6%에서 2%를 분리하여 개인이 대형 연금기금에 투자하는 주식연금 도입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임
  - 현재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등 일부 유럽 국가 또한 주식 투자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연금 시스템을 도입함
- 신호등 연정은 주식연금 부분 도입의 첫 번째 단계로, 연정협약서에서 연기금이 자본시장에 투자할 100억 유로 규모의 준비금 편성을 약속함
  - 자민당과 녹색당은 주식연금의 도입에 찬성했지만 제1당인 사민당은 이에 반대하여 위와 같은 절충적인 방안이 제안됨
  - 그러나 독일 국민의 49%는 충분하지 않은 재정 투입으로 인해 해당 정책이 가져올 효과에 대해 의

27) 2001년 독일 연금개혁의 일환으로, 독일 정부는 공적연금 지급수준의 삭감을 통해 법정연금 보험료를 상상을 통제하는 대신 보조금과 세제 지원으로 구성된 공사연계 상품인 '리스터연금'을 도입함

28) 김동겸(2021. 11. 15), 「독일의 사적연금제도 개혁 논의와 시사점」, 『KIRI 리포트』, 이슈분석

29) 스웨덴은 1999년 연금개혁을 통해 공적연금제도 내에 프리미엄 연금을 도입시켜, 전체 보험료의 18.5% 중 2.5%는 민간 보험회사, 은행, 투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운영펀드에 투입되도록 의무화함

30) FDP(2021), "Gesetzliche Aktienrente einführen"

문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임<sup>31)</sup>

- 따라서 해당 정책은 신호등 연정의 임기가 시작되고 난 후에야 그 실효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5. 영국 비작업장연금(NWP)의 디폴트옵션 도입 및 소비자경고 의무화 제안<sup>32)</sup>

-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비작업장연금(Non-Workplace Pension, 이하 'NWP'라 함) 가입자의 상당수가 운용상품을 선택하지 않고 현금성 자산으로 적립금을 운용하여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NWP는 퇴직연금(Workplace pension)에 가입할 수 없는 자영업자들 또는 퇴직연금을 보완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가입하는 연금으로 개인연금(Individual Personal Pension; IPP), 개인 투자형 개인연금(Self-invested Personal Pension; SIPP) 등이 NWP에 해당함
  - 동 연금은 투자 상품의 복잡성 증가로 인해 가입자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낮게 나타나고 있고, 투자자문을 받지 않는 가입자들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전체 가입자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표 2〉 영국 NWP에서 투자자문을 받지 않는 가입자의 비중

(단위: %)

| 1988~2012년 | 2012~2017년 | 2019년 |
|------------|------------|-------|
| 8          | 28         | 35    |

주: 신계약 건수 기준임

자료: FCA(2021. 11), "Improving outcomes in non-workplace pensions", CP21/32

- 그러나 투자자문 없이 적립금을 운용하는 가입자들의 상당수가 정기적으로 투자 현황을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가입 목적에 맞지 않는 투자 상품을 선택하거나, 심지어 상품을 선택하지 않고 오랜 기간 현금으로 적립하여 낮은 수익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크게 노출되어 있음
- 이에 영국 금융행위감독청 FCA는 NWP 사업자들이 가입자들의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하기 위해 디폴트옵션과 소비자경고를 의무화하는 규칙 개정안을 발표함

- FCA는 규칙 개정안에서 보험회사, 플랫폼 업체 등으로 하여금 NWP 신계약에 한하여 투자자문을 받지 않는 가입자에게 디폴트옵션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규제안을 제시함

31) Tagesschau(2021. 12. 6), "Kommt jetzt die Aktienrente?"

32) FCA(2021. 11), "Improving outcomes in non-workplace pensions", CP21/32

- 단, 동 개정안은 사업자가 디폴트옵션을 제시하는 것은 의무화하고 있지만 가입자가 디폴트옵션을 채택하는 것은 의무화하지 않아, 가입자가 아무런 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자동적으로 디폴트옵션이 채택되지는 않음
  - 참고로 영국의 DC형 퇴직연금에는 이미 디폴트옵션이 도입되어 있으며, 가입자가 옵션을 선택하지 않을 시 디폴트옵션이 자동으로 채택되어 현재 92%의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디폴트옵션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음
- 디폴트옵션은 일반적인 가입자를 가정하여 설계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험회피도 등 가입자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의 가입자별 응답을 반영해서는 안 되며, NWP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한 가지 종류의 디폴트옵션만을 제공해야 함
- 디폴트옵션은 분산투자과 적절한 수익성, ESG 요소를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하며, NWP 사업자 또는 디폴트옵션 설계자는 디폴트옵션을 3년 주기로 점검해야 함
  - 연금은 장기투자라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투자의 지속가능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고려하여 디폴트옵션이 설계되어야 하며 3년마다 디폴트옵션의 성과 및 지속가능성 등이 검토되어야 함

○ 또한 FCA는 개정안에서 NWP 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을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하는 가입자에게 소비자경고를 보내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가입자들이 수익성 있는 상품에 투자하도록 장려하는 방안을 제안함

- FCA는 투자자문을 받지 않는 가입자일수록 NWP 적립금을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러한 가입자들에게 현금성 자산 운용의 위험성을 알려야 한다고 판단함
  - FCA가 조사한 NWP 사업자들의 약 3분의 1은 50세 미만의 가입자 중 3% 이상의 가입자가 상당한 규모의 적립금을 지속적으로 현금성 자산에 투자하고 있다고 응답함
- 소비자경고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4천 파운드 이상의 NWP 자산을 운용하는 가입자 중 NWP 자산의 25% 이상을 현금성 자산으로 6개월 이상 운용하는 가입자임
  - 현금성 자산에는 현금과 FCA Handbook 규정에서 현금과 유사하다고 정의되는 투자 자산 외에 머니마켓펀드(MMF)도 포함됨
  - 단, 현행 55세인 연금 개시 연령까지 남은 기간이 5년 이하인 고령의 가입자에게는 소비자경고가 의무화되지 않는데, 이는 연금 개시가 가까운 시점에는 자산의 안전한 운용이 중요하기 때문임
- NWP 사업자는 가입자의 현금성 자산 운용 현황을 3개월마다 검토하여 소비자경고 대상에 해당하는 가입자에게는 매년 소비자경고를 보내야 함
- 소비자경고의 내용에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손해의 예시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 예시에서는 1만 파운드를 10년 동안 현금성 자산에 투자할 경우의 운용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 동 개정안에 대하여 FCA는 2022년 2월까지 의견을 수렴하여 2022년 중에 최종 규칙을 발표할 예정이며, 최종 규칙의 발표일자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음

## 6. 중국의 생명보험 판매규제 강화와 영향

- 중국에서 생명보험에 관한 민원 건수는 2020년 4/4분기를 제외하고 최근 1년간 계속 증가해 왔음<sup>33)</sup>
  -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CBIRC)에 따르면 2021년 2/4분기 생명보험에 관한 민원 건수는 전분기 대비 22.4% 증가한 2만 7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생명보험에 관한 전체 민원 건수 가운데 불완전판매로 인한 민원 건수는 1만 2천 건임

〈표 3〉 중국 생명보험에 관한 민원 건수 변화 추이

(단위: 건, %)

| 보험 민원 | 2020 2/4 | 2020 3/4 | 2020 4/4 | 2021 1/4 | 2021 2/4 |
|-------|----------|----------|----------|----------|----------|
| 건수    | 17,532   | 19,859   | 14,695   | 22,353   | 27,362   |
| 증가율   | 46.0     | 13.3     | -26.0    | 52.1     | 22.4     |

주: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증가율을 의미함

자료: 中国银保监会消费者权益保护局, “关于2021年第二季度保险消费投诉情况的通报”

- 2021년 11월 중국 CBIRC는 생명보험에 관한 민원 문제의 해소를 위해 생명보험을 판매하는 사업자와 모집종사자에 적용될 『생명보험 판매 관리방법』(의견수렴안)을 공포함
  - 최근 공포된 『생명보험 판매 관리방법』은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 향후 생명보험 판매에 관한 감독규정의 강화와 이에 따른 영향을 예측해 볼 수 있음
  - 『생명보험 판매 관리방법』(의견수렴안)은 판매채널별로 존재하는 현행 감독규정과 달리 판매채널을 구분하지 않고 생명보험을 판매하는 모든 사업자와 모집종사자를 감독대상에 포함하였음
    - 현행 판매채널별 감독규정은 『온라인보험 관리방법』, 『보험대리인 감독규정』, 『보험중개인 감독규정』, 『상업은행의 보험대리업무 관리방법』 등으로 나뉘어 있음<sup>34)</sup>
    - 『생명보험 판매 관리방법』의 적용대상인 사업자와 모집종사자는 보험회사, 보험대리회사(은행과 같은 보험대리자격을 갖춘 판매사업자 포함), 보험중개회사와 그들의 보험판매자(보험설계사, 보험중개인)를 포함함

33) 中国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2021. 9), “关于2021年第二季度保险消费投诉情况的通报”

34) 글로벌보험센터(2020. 12), 「특집」 해외 판매채널: 중국편, 『해외 보험동향』, 2020년 겨울호

- 동 관리방법의 주요 내용은 생명보험 판매자에 대한 관리 강화, 판매행위 규범화, 방카슈랑스 규제 완화, 판매수수료 지급체계 개선,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음
  - 생명보험 판매자에 대한 관리 강화와 관련해서는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보험판매자의 모집과 교육 강화, 보험판매자 등급제도 도입, 신용도 평가, 정보공개 확대 등이 있음
    - 중국 CBIRC는 생명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 생산성 하락 및 인력 이탈 문제가 판매자에 대한 관리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보험판매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 것으로 사료됨
  - 판매행위 규범화 관련 내용으로는 보험상품 등급제도 도입, 보험고객 적합성 평가, 보험상품 설명 제도 도입, 보험상품 설명회 관리 강화 등이 있음
    - 생명보험에 관한 대부분 민원이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에게 상품의 중요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행위(이하, '불완전판매'라 함)로 인해 발생함에 따라 중국 CBIRC는 불완전판매 문제의 해소를 위해 판매행위를 규범화한 것으로 보임
  - 방카슈랑스에 대한 규제 완화는 기존 1개 은행 지점에서 최대 3개 보험회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1+3'의 협업방식에서 1개 은행 지점에서 1개 보험회사의 상품만을 판매하는 '1+1'의 협업방식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1+1'의 협업방식을 선택하는 은행 지점에서 보험회사는 필요에 따라 보험판매자를 파견하여 은행 직원과 함께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고 단독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도 있음
  - 판매수수료 지급체계 개선의 경우 판매수수료 초년도 지급 한도와 판매수수료 지급 기간에 제한을 두었음
    - 이는 초년도 판매수수료 과다 지급 관행 개선을 통해 불완전판매 방지 및 보험료 인하를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는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판매자 본인 명의로 보험 가입을 하는 행위와 동일 보험사업자 소속 보험판매자 간의 상호 보험 가입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함
    - 중국에서는 보험회사가 보험판매자를 모집할 때 본인 명의로의 보험 가입과 상호 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하여 채용하는 관행이 존재하고 있으나, 중국 CBIRC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것으로 보임

〈표 4〉 『생명보험 판매 관리방법』(의견수렴안)의 주요 내용

| 구분               | 내용                                                                                                                                                                                                                                                                                                                                                                                                                                                                                    |
|------------------|---------------------------------------------------------------------------------------------------------------------------------------------------------------------------------------------------------------------------------------------------------------------------------------------------------------------------------------------------------------------------------------------------------------------------------------------------------------------------------------|
| 판매자<br>관리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판매자의 모집과 교육: 판매자 모집에 관한 과학적인 계획의 제정 요구, 판매자 모집 공고의 발표는 보험사업자로 한정, 판매자 직원교육 및 판매업무 교육 등</li> <li>• 보험판매자 등급제도 도입: 교육 배경, 종사경력, 업무성과, 교육과 시험 성적, 신용도 평가 등 지표에 따라 보험판매자를 1등급(신입 사원)~4등급(경력 사원)으로 구분</li> <li>• 신용도 평가: 보험판매자의 업무성과, 포상, 처벌, 민원 상황에 따라 보험판매자의 신용도를 평가</li> <li>• 정보공개: 보험협회가 보험판매자의 기본정보, 종사경력, 신용도 평가결과, 등급, 판매 상품 등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li> </ul>                                                                          |
| 판매행위<br>규범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상품 등급제도 도입: 상품구조, 위험 정도,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보험상품을 1등급(단순 상품)~4등급(복잡 상품)으로 구분, 보험판매자와 보험상품 등급에 따라 판매 가능 상품을 명시(예: 1등급에 속한 보험판매자는 1등급에 속한 보험상품만을 판매 가능)</li> <li>• 보험고객 적합성 평가: 보험을 판매할 때 보험고객의 기본정보, 위험 감당 능력, 보험료 납입 능력을 평가(예: 원칙상 판매 상품의 총보험료를 고객 연소득 30% 이하로 제한)</li> <li>• 보험상품 설명제도 도입: 만기가 1년 이상인 보험상품 판매 시 상품설명서 제공, 고객 적합성 평가결과 고지, 상품설명서 교부 확인서 보존 등</li> <li>• 보험상품 설명회 관리 강화: 보험회사나 소속 보험판매자가 온라인 방식을 이용해 상품을 홍보할 때 영상자료 보존 등</li> </ul> |
| 방카슈랑스<br>규제 완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 협업방식 추가: 1개 은행 지점에서 1개 보험회사의 상품만을 판매하는 ‘1+1’ 협업 방식을 추가. 이 경우에 보험회사는 은행 지점에 보험판매자를 파견해 은행직원과 함께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도 있고 단독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도 있음</li> </ul>                                                                                                                                                                                                                                                                                         |
| 판매수수료<br>지급체계 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매수수료 지급체계 개선: 판매수수료 초년도 지급 한도를 전체 판매수수료의 40%로 한정; 판매수수료 지급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설정</li> </ul>                                                                                                                                                                                                                                                                                                                                                       |
| 시장질서<br>교란행위 금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대상: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판매자 본인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는 행위와 보험사업자 소속 보험판매자 간의 상호 보험 가입 행위</li> </ul>                                                                                                                                                                                                                                                                                                                                                |

자료: 中国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 「人身保险销售管理办法」(征求意见稿)

○ 향후 동 관리방법이 시행되면 생명보험 유통시장은 보험설계사채널과 방카슈랑스채널을 중심으로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중국의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 증원을 통해 성장을 추구하는 전략은 보험판매자 및 보험상품 등급제도의 도입으로 지속하기 어렵게 됨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의 질적 성장 강화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이는 보험판매자와 보험상품 등급제도 도입으로 신규 등록 보험설계사가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보험 기간이 긴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없기 때문임
- 은행들은 ‘1+1’의 협업방식의 허용으로 대형 보험회사 및 보험자회사의 보험판매를 확대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방카슈랑스채널 의존도가 높은 비은행계 중소형 생명보험회사 비중이 축소될 것으로 보임
  - 현재 중국에서 은행계 생명보험회사는 7개사가 있으며, 이들 생명보험회사의 은행 주주는 교통은행

(BOCOM), 북경은행(BOB), 건설은행(CCB), 공상은행(ICBC), 농업은행(ABC), 초상은행(CMB) 및 중국은행(BOC)임

- 방카슈랑스에 대한 규제 완화로 인해 비은행계 중소형 보험회사들은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가지고 은행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대형 보험회사와의 경쟁에서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상됨

## 7. 일본 경제산업성의 DX(Digital Transformation) 우수 보험회사 선정

- 일본 경제산업성·증권거래소는 DX 실시 우수기업을 평가 및 선정하여 'DX 종목 2021' 28개사, 'DX 주목기업 2021' 20개사를 2021년에 6월에 발표함
  - 'DX 종목(Digital Transformation Stocks)'은 정부가 기업의 DX 실시를 촉진하기 위해 신청한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하여 매년 업종별로 1~2개 DX 실시 우수기업을 선발하는 제도임<sup>35)</sup>
    - 경제산업성이 2015년부터 실시한 'IT경영 종목'을 2020년에 'DX 종목'으로 개편하여 실시 중임
  - 주요 평가항목은 비즈니스 모델, 전략, 조직·제도, 디지털 기술 능력, 성과·성과지표, 거버넌스 등임
- 현재 일본 정부는 DX 실시 기업<sup>36)</sup>에게 법인세 경감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DX 실시 중소기업에게는 정부 및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 'DX 종목' 선정 기업에게는 증서 수여와 함께 'DX 종목' 로고 사용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기업 가치와 기업 브랜드 이미지 제고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현재 경제산업성은 'DX 종목' 선정 기업에게 추가적으로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을 검토하고 있음
- 일본 경제산업성이 2019~2021년 발표한 DX 우수기업 중에서는 MS&AD, 손보홀딩스, SBI보험 그룹 등의 보험회사가 선정됨
  - MS&AD는 'IT경영 종목 2019', 'DX 주목기업 2020', 'DX 종목 2021'에 각각 선정됨
  - 손보홀딩스는 'IT경영 종목 2019', 'DX 종목 2020', 'DX 종목 2021'에 각각 선정됨
  - SBI Insurance Group은 처음으로 'DX 주목기업 2021'에 선정됨

35) [https://www.meti.go.jp/policy/it\\_policy/investment/keiei\\_meigara/keiei\\_meigara.html](https://www.meti.go.jp/policy/it_policy/investment/keiei_meigara/keiei_meigara.html)

36) 개정 정보처리촉진법(2020년 5월 시행)상 일정 기준을 갖춘 DX 기업이 대상임

○ MS&AD는 미츠이스미토모해상 등을 포함한 국내 5개 보험회사를 소유하는 일본 내 상위 2위의 손해보험 지주회사이며, DX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첫째(2019년), 텔레메트릭스 기술과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이용한 전용 자동차보험(드라이브 레코드형)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입수한 각종 주행 데이터와 사고 데이터를 보험실무에 활용하는 등 안심·안전한 모빌리티(Mobility) 사회 실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음<sup>37)</sup>
  - 또한, 세계적인 스타트업에 투자 또는 기술을 협력하기 위하여 2018년 미국 실리콘밸리에 CVC (Corporate Venture Capital)를 설립하여 지분인수 및 출자 등의 투자업무를 실시하고 있음
- 둘째(2020년), 중기경영계획 ‘Vision 2018~2021’ 중에서 ‘DX 전략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그룹 최고 디지털 책임자(Chief Digital Officer; CDO)가 관리할 전문부서와 디지털화 추진위원회를 각 자회사별로 설치하고, 그룹사와 전 직원에게 DX, DI, DG<sup>38)</sup>를 추진하는 등 전략적으로 DX를 추진한 것이 높게 평가되었음<sup>39)</sup>
  - 주요 DX 추진 사업은 ‘MS1 Brain(대리점 지원시스템)’, ‘텔레메트릭스 손해서비스 시스템’, 세계 최초의 ‘실시간 재난피해 예측 웹사이트 서비스’ 구축 등임
- 셋째(2021년), 동 회사에서 그룹사 전 직원 사업 아이디어 공모 및 창업 추진 프로그램인 ‘Digital Innovation Challenge Program’을 실시하고, 선정한 우수 아이디어를 실무와 신사업 추진에 반영하는 등 전사적으로 DX 문화를 보급한 점이 높게 평가되었음<sup>40)</sup>
  - 2021년에 추진한 주요 DX 사업으로는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실무 과제를 해결하는 ‘RisTech(Risk×Technology)’를 추진하고, 코로나19 등 비상시 소비자가 비접촉 방식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보험계약체결 플랫폼 구축 등을 들 수 있음

○ 손보홀딩스는 손보재팬 등을 포함한 국내 5개 보험회사를 소유하는 일본 내 상위 3위의 손해보험 지주회사이며, DX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첫째(2019년), 손보재팬이 LINE과 협업으로 고객의 사고·민원 접수·상담에서 보험금 청구 절차까지 신속하고 간편한 사고 접수·사고 대응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과 소통을 강화하는 등 안심·안전·건강한 사회 구축을 위해 DX를 효과적으로 추진한 점이 높게 평가되었음<sup>41)</sup>
  - 또한,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활용하여 고령자·저연령 고객의 자동차 사고를 줄이고, 수집한 정보를 분석하는 ‘안전운전지원기능’을 고객에게 제공하였으며, 회사가 실시간 자동차 사고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사고 시 자동 통보기능’, ‘사고현장 자동 출동서비스’ 등을 구축함

37) 経済産業省(2020), 「攻めのIT経営銘柄2019」, 選定企業レポート

38) 디지털 혁신(Digital Innovation; DI), 디지털 세계화(Digital Globalization; DG)

39) 経済産業省(2020), 「DX銘柄2020」, 選定企業レポート

40) 経済産業省(2021), 「DX銘柄2021」, 選定企業レポート

41) 経済産業省(2019), 「DX銘柄2019」, 選定企業レポート

- 둘째(2020년), 미국 CIA 협력회사인 빅데이터 전문 Palantir Technologies와 공동으로 Palantir Japan을 설립하여 공공기관과 대기업이 보유한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플랫폼 사업을 2019년부터 추진한 것이 높게 평가되었음<sup>42)</sup>
  - 또한, 헬스케어, 인슈어테크, 사이버보안 등의 분야에서 스타트업 기술을 활용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실리콘밸리 등에 'Digital Lab'을 설치하여 다양한 실험을 추진하는 등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진하고 있음
- 셋째(2021년), 사회적 책임과 5개 사업분야<sup>43)</sup>에 대한 중장기적 수익 창출을 위하여 국내외 그룹사가 보유한 다양한 실시간 데이터와 파트너 기업의 기술을 연계하는 RDP(Real-time Data Platform)를 구축하는 등 DX를 실무에 적극 활용하고 있음<sup>44)</sup>
  - 예컨대, 간병사업회사인 SOMPO Care의 경우 입주 고객의 바이탈 데이터와 시설 관리 중에 수집한 데이터를 통합·분석하여 간병시설 입주 고객의 컨디션과 응급상황을 예측하는 데 활용하는 등 고객의 사고 예방과 간병 직원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 SBI Insurance Group은 SBI손해보험 등을 포함한 국내 7개 보험회사(단기소액보험 포함)를 소유한 중소형 손해보험지주회사이며, 'DX 주목기업 2021'로 선정된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음<sup>45)</sup>

- 첫째, SBI손해보험은 자동차 사고 예방 기능을 확대하기 위하여 급 브레이크, 과속 주행 등의 데이터 확보와 분석 제공 기능이 있는 텔레메트릭스, 전용 디바이스, 스마트폰 앱, Bluetooth 등을 활용한 'SBI 안전운전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자동차 안전 운행을 지원하고 있음
- 둘째, 자회사인 SBI소액단기보험은 판매채널 업무 표준화와 간소화를 위해 블록체인 플랫폼 'CORDA'를 활용한 '대리점·모집인 관리 등록시스템'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그룹사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임

42) 経済産業省(2020), 「DX銘柄2020」, 選定企業レポート

43) 간병, 방재, 모빌리티, 해외 농업, 헬스케어 등임

44) 経済産業省(2021), 「DX銘柄2021」, 選定企業レポート

45) 経済産業省(2021), 「DX銘柄2021」, 選定企業レポート

# II

## 해외 보험산업 시장 현황

### 1. 미국 보험산업의 M&A 동향

- 2021년 상반기 전 세계적으로 보험산업 인수 및 합병(M&A) 거래 건수가 소폭 감소한 반면, 미국 보험산업은 이러한 추세와 달리 M&A 거래 건수가 증가하여 2015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함<sup>1)</sup>
  - 전 세계 보험산업의 2021년 상반기 M&A 거래 건수는 197건으로 2020년 하반기 206건에서 9건 (2.9%) 감소하였음
  - 미국 보험산업의 2021년 상반기 M&A 거래 건수는 116건으로 2020년 하반기 102건에 비해 14건 증가하여 하락하거나 현상을 유지한 다른 나라 대비 높은 증가율(7.3%)을 보였음
  - 유럽 보험산업의 2021년 상반기 M&A 거래 건수는 51건으로 2020년 하반기 50건에 비해 1건 증가하여 안정세를 유지하였으며 국가별로는 영국, 스페인, 독일 순으로 활발한 거래가 있었음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2021년 상반기 보험산업의 M&A 거래 건수가 대폭 감소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과 높은 규제の影響으로 산업 내 M&A보다 온라인 은행, 플랫폼 기업과의 제휴가 증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은 2021년 상반기 보험산업의 M&A 거래 건수가 대폭 감소하여 이스라엘 2건,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UAE가 각각 1건의 거래를 기록함

〈표 1〉 보험산업의 글로벌 M&A 거래 건수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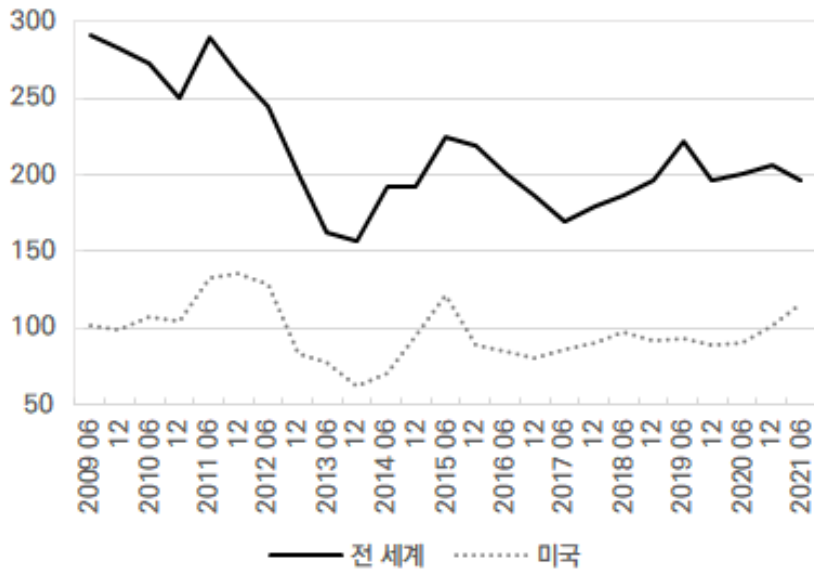
| 구분         | 2020년 하반기 | 2021년 상반기 | 변화율   |
|------------|-----------|-----------|-------|
| 전 세계       | 206       | 197       | -2.9  |
| 미국         | 102       | 116       | +7.3  |
| 유럽         | 50        | 51        | +2.0  |
| 아시아 태평양 지역 | 37        | 18        | -51.4 |
| 중동 및 아프리카  | 17        | 5         | -70.1 |

자료: Clyde&Co

1) Clyde&Co(2021), "Insurance Growth Report 2021 Mid-year update"

〈그림 1〉 보험산업 M&A 거래 건수 추이(전 세계, 미국)

(단위: 건)



자료: Clyde&Co(2021)

○ 2021년 상반기 미국 보험산업 M&A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0배 성장한 약 300억 달러에 달하였는데, 이러한 급격한 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투자자들의 디지털기술 및 인슈어테크에 대한 관심 증가, 업무대행대리점(Management General Agents; MGA)의 M&A 증가, 자본 확충을 위한 전략적 처분 등이 보고되고 있음<sup>2)</sup>

- 미국의 온라인 중고차 매매 플랫폼 Carvana<sup>3)</sup>는 인슈어테크 스타트업인 Root Insurance에 투자하여 신주인수권 또는 지분(5%)을 보유하고, Root Insurance는 이러한 투자를 바탕으로 Carvana의 온라인 중고차 매매 관련 자동차보험 상품을 개발하여 제공할 예정임<sup>4)</sup>
- 기존의 MGA는 보험회사로부터 인수 권한을 받아 대리인, 브로커,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최근에는 자체 채널을 활용하여 보험 가입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자체 보험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소규모 보험회사와의 M&A를 모색하고 있음<sup>5)</sup>
- 낮은 이자율, 복잡해지는 자본 요구사항 등의 영향으로 보험회사는 기존 사업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거쳐 회사의 주요 사업에 대한 자본 확충과 디지털 투자를 목적으로 비주력 사업을 전략적으로 처분하고

2) Clyde&Co(2021), "Insurance Growth Report 2021 Mid-year update"

3) Carvana는 딜러 중심의 중고차 매매 관행을 개선하여 온라인으로 자동차를 구매하고 관련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디지털 사업자임

4) CARVANA(2021. 8. 11), "CARVANA AND ROOT, INC. EXCLUSIVELY PARTNER TO DEVELOP INDUSTRY-FIRST INTEGRATED AUTO INSURANCE SOLUTIONS FOR CARVANA CUSTOMERS"

5) Insurance Business(2021. 9. 16), "What's Going on in the MGA Market?"

주력 사업에 인수 및 투자를 하고 있음<sup>6)</sup>

- 미국의 보험회사 Allstate는 보험회사 National General 인수를 통해 개인보험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10%로 끌어올렸으며, 미국 금융그룹 Metlife는 건강보험 사업에 집중을 위해 스위스 보험회사 Farmer's에 손해보험 사업부를 매각함

○ 분야별로 생명보험 및 연금 분야에서는 보험회사가 자본을 확충하고 핵심 분야에 집중하기 위한 목적으로 포트폴리오 매각, 재보험 거래 등의 활발한 M&A 활동을 보인 반면,<sup>7)</sup> 손해보험 분야에서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기술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가 증가함에 따라 인슈어테크 기업과의 활발한 M&A 활동을 보였음<sup>8)</sup>

- 보험회사 Allstate는 생명보험 사업 부문을 투자회사인 Blackstone에 28억 달러에 매각하였으며, 이를 통해 확충한 자본을 손해보험 부문으로 재배치함
- 생명보험회사 Massachusetts Mutual Life는 금융 지주회사 American Financial Group의 생명보험 부문 자회사인 Great American Life를 인수하여 연금 상품, 유통 채널을 확충함
- 보험회사 USAA는 사용량 기반 자동차보험을 제공하는 인슈어테크 회사인 Noblr Car Insurance의 인수를 발표하고, 사용량 기반의 자동차보험이 고객의 운전 습관 개선과 보험료 절감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 또한 미국 보험회사의 M&A는 해외 거래보다 국내 거래 건수가 많았는데,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자국 우선주의 확대 또는 해외 거래 대비 국내 거래 용이성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됨<sup>9)</sup>

○ 글로벌 컨설팅 회사 PwC는 미국 보험산업의 M&A 증가 추세가 2022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sup>10)</sup>

- 현재 많은 사모펀드, 자산운용사 등이 보험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모색하고 있어 2022년에도 미국 보험산업에서 M&A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6) Bain&Company(2021. 2. 16), "Using M&A to Help Insurers Focus on Their Core"

7) EY(2021. 6. 30), "Insurance M&A: A review of Q1 2021 and expectations for the rest of the year"

8) Carrier Management(2021. 9. 2), "Why M&A Is Booming in the P/C Insurance Space"

9) Insurance Business(2021. 11. 9), "US Insurance Dealmakers - what's next?"

10) PwC(2021), "Insurance: Deals 2022 Outlook"

## 2. 호주의 사이클론 피해에 대한 파라메트릭 보험상품(상품명: Redicova) 개발<sup>11)</sup>

○ 호주는 자연재해에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으며, 특히 북부 지역은 사이클론과 같은 재해가 빈번히 발생함

- 호주는 사이클론, 폭염, 산불, 가뭄, 홍수, 폭풍, 지진, 쓰나미, 산사태와 같은 각종 자연재해에 크게 노출되어 있음
- 특히 호주 북부 지역은 사이클론, 폭염, 홍수, 산불이 비교적 빈번히 발생하고, 최근 들어 기후변화 위험 관리가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음

○ 최근 영국 로이즈 DRF(Disaster Risk Facility)<sup>12)</sup>는 호주 북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이클론 피해를 보상하는 파라메트릭 보험상품(Redicova)을 개발함

- 2021년 11월 영국 로이즈 DRF는 호주 북부에 발생하는 사이클론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고자 파라메트릭 보험인 Redicova<sup>13)</sup>를 출시함
  - 파라메트릭 보험이란 미리 정해진 변수와 모형에 따라 보험금을 정하는 것으로, 손실규모를 측정하기 어려운 재해 손실에 대비한 보험임
- 상품 개발에는 영국 로이즈 DRF 회원인 AXA ZL, Hiscox, RenaissanceRe, Beazley 등의 보험회사 참여함

○ Redicova는 특정 지역에서 풍속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보험사고 기준을 적용하여 일시 보상을 지급하는 상품임

- 동 상품은 호주 기상청이 정한 특정 사이클론이 일정 풍속을 가지고 특정 지역을 지나갈 때 이를 보상하는 상품임
- 특정 사이클론이란 호주 기상청이 지정한 ‘강한 열대성 사이클론(Severe Tropical Cyclone)’을 의미하며 이는 3, 4, 5등급을 가진 열대성 사이클론을 뜻함
  - 사이클론이 육지에 상륙하면 호주 기상청이 이들의 이동 속도와 경로를 추적하고 관측 자료에 근거하여 사이클론에 등급을 부여함
- 일정 풍속이란 강한 열대성 사이클론 중에서도 ‘매우 파괴적인 바람(Very Destructive Winds)’<sup>14)</sup>을

11) <https://redicova.com.au/redicova-solution/>

12) 영국 로이즈 DRF(Disaster Risk Facility)는 영국 로이즈가 신흥국의 자연재해나 기후위험으로부터 보험과 같은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만든 컨소시엄임

13) Redicova는 ‘ready cover’의 발음을 이용하여 만든 이름임

14) 호주 기상청은 열대 사이클론으로 생기는 바람 중 평균 지상풍(Surface Winds)이 118km/h 이상이고 육지에서 최대 돌풍이 165km/h 이상일 경우를 ‘매우 파괴적인 바람(Very Destructive Winds)’으로 정의함

의미하는데, 이 같은 바람과 바람으로부터 5km 이내에 있는 '버퍼존(Buffer Zone)'이 보험사고 기준에 영향을 받는 지역임

- 상기 사이클론과 풍속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중 호주 북부 집수지역(Catchment Area) 내 보험지역(Insured Situation)이 보험금 지급 대상임
  - 집수지역이란 기업이 타깃으로 하는 고객층이 많이 모여 있는 지역을 의미하며, 보험지역이란 호주 해안선으로부터 300km 이내인 내륙 지역을 의미하는데 각 주마다 다른 위치 기준<sup>15)</sup>을 두고 있음

○ Redicova는 바람으로 인한 피해만을 보상하며 사이클론 이후에 발생하는 기타 위험은 보상하지 않는 단기 보험상품임

- Redicova는 사이클론 이후 발생한 비, 홍수, 화재, 폭발, 지진, 번개, 절도 및 강도와 같은 기타 위험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
- 동 상품은 보험기간이 1년인 단기보험 상품으로 매년 갱신이 가능하고, 보험 증권은 하나의 지역(location)만을 보상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라면 추가적인 보험증권 구매가 필요함

○ 동 상품의 가입 대상은 호주 북부 지역 거주자와 기업이며, 온라인으로 보험 가입이 가능함

- 호주 북부 집수지역에 위치한 18세 이상의 거주자나 동 지역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개인과 상업적 혹은 농업 경영 목적의 회사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이 보험 가입 대상임
  - 해당 지역 거주민은 고용 여부와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함
- 보험 가입은 Redicova 웹사이트를 이용하거나 로이즈가 승인한 추천인<sup>16)</sup>의 도움을 받아 온라인으로 진행됨

○ 보험료는 유닛(Unit) 단위로 납부하는데 구매한 유닛 개수와 유닛 단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짐

- 1유닛은 1,000호주달러의 보험가입금액을 의미하며 보험가입자는 원하는 수만큼 유닛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됨
- 유닛 단가는 보험가입자의 거주 지역과 향후 강한 열대성 사이클론이 지닌 잠재 위험성을 계산하여 청약 시점에 차별적으로 부과됨
- 보험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Redicova 웹사이트에서 유닛 단가를 확인하고 보험료 견적을 받을 수 있음

15) 서부에 위치한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주의 보험지역은 Carnavon 지역을 포함한 북쪽 지역을 의미하며, 동북부에 위치한 퀸즐랜드 주의 보험지역은 Bundaberg를 포함한 북쪽 지역을 의미하며, 중북부에 위치한 노던 준주의 경우에는 모든 지역이 보험지역 대상임

16) 로이즈가 승인한 추천인은 Redicova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함

○ 보험금은 지역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100% 또는 30%가 적용되며 보험가입자는 손실발생 여부의 증빙 없이 보험금을 즉시 지급받음

- 보험가입자가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보험지역이 호주 기상청이 정한 ‘매우 파괴적인 바람’에 해당할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버퍼존’에 해당할 경우 30%를 지급함
- 호주 기상청이 ‘매우 파괴적인 바람’임을 발표하면 로이즈 시스템이 이를 확인하고 보험가입자에게 이 메일을 보내 보험금 지급 대상임을 통보함
-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통보받은 보험가입자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통해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연락처와 은행 정보와 같은 세부 정보를 입력한 후 전자적 방식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로이즈는 이를 승인하고 보험가입자의 지정 은행 계좌로 즉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됨

○ Redicova는 사이클론으로 인한 피해 지역에 신속하고 즉각적인 구제 방안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지역사회는 재난 회복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 호주 북부 지역사회는 강한 열대성 사이클론의 영향을 받더라도 손해사정과 보험 분쟁에 대한 우려 없이 신속하게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이 같은 상품 개발을 환영하는 입장임
- 호주 보험 업계 또한 동 상품이 손실 시점에서 신속한 현금 지원과 같은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보험 솔루션 제공을 통해 고객 중심적 접근 전략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함

### 3. 영국 LV의 탈상호화 움직임과 계약자 보호 논란

○ 최근 영국의 오래된 상호회사 LV의 경영진이 회사를 매각하고 탈상호화하기 위해 미국 대형 주식회사의 인수 제의를 받아들이고 이를 회원투표에 회부하자 보험산업의 다양성 및 계약자보호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되며 탈상호화에 관한 논쟁이 시작됨

- LV는 1843년 Liverpool Victoria 지역의 가난한 노동자 계층이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설립된 영국에서 가장 유서 깊은 상호회사<sup>17)</sup> 중 하나로, LV의 탈상호화는 영국 보험산업에서 상호회사의 몰락을 의미한다는 시각이 제기됨<sup>18)</sup>
- LV의 경영진이 미국의 대형 주식회사 Bain Capital에 LV를 매각<sup>19)</sup> 및 탈상호화 하는 안건에 대하여 회원투표를 진행하자, LV의 보험계약자 보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17) 상호회사란, 주주가 없고 소비자가 곧 주인인 회사로서 보험회사의 경우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계와 유사하게 회원들의 상호 부조를 통하여 회원, 특히 유배당 계약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임

18) Insurance ERM(2021. 11. 26), “FCA has not done enough to tackle LV demutualisation, MPs told”

19) Bain Capital은 LV의 2021년 9월 기준 솔벤시II 자기자본 장부가의 0.9배에 상당하는 금액인 5억 3천만 파운드에 인수할 것을 제안함

- LV 경영진의 제안이 회원투표에서 모두 통과될 경우, 무배당 계약자에게는 1인당 £100(한화 약 16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며, 유배당 계약자에게는 계약에 따라 1인당 약 £150~£700(한화 약 24~11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분석됨<sup>20)</sup>
- 일각에서는 무배당 계약자의 보상금 £100가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라는 반응<sup>21)</sup>과 함께 감독당국의 규제를 촉구하는 온라인 청원이 열리는 한편,<sup>22)</sup> 탈상호화에서 중요한 보호 대상은 유배당 계약자이기 때문에 무배당 계약자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됨<sup>23)</sup>
- 영국에서 이전의 대형 상호회사 매각 사례에서는 항상 소비자들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는데, 이는 상호회사 매각 시 인력이 감축되고 주주에 대한 이익 배분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분배되는 지급금이 줄어들기 때문임<sup>24)</sup>

○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은 LV로 하여금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도록 요구하였고, 이에 LV는 자본의 부족과 계약자 감소로 인해 주식회사의 인수제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설명하였으나 투표는 부결됨

- 회원투표 후 감독당국과 법원의 승인 절차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FCA는 현 단계에서 회원투표의 진행을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으나 매각 및 탈상호화의 이유와 영향에 대하여 계약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함<sup>25)</sup>
- LV는 상호회사의 제한된 자본 확충수단과 회원 수의 감소로 인해 독립적으로 사업을 지속하기에는 자본이 부족하며 유배당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Bain Capital의 인수제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설명함
  - LV는 2016년 솔벤시II가 도입되고 브렉시트에 대한 국민투표가 진행되면서 시장 변동성으로 인해 재무건전성이 악화되었고, LV의 유배당계약자 수는 2017년에 비해 40% 감소하여 2021년 현재 271,000명이며 향후 10년 동안 60% 정도 더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힘<sup>26)</sup>
  - Bain Capital은 12건의 입찰 중 유배당 보험계약 기금을 따로 보호하여 계약자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데 동의한 유일한 기업이었다며 인수제의를 받아들이는 것은 유배당 계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설명함
- 그러나 LV의 자본수준, 경영진에 대한 불신, 또 다른 상호회사 Royal London의 인수제의 등에 대한 논쟁이 불거지며 LV 경영진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게 되어 2021년 12월 10일 회원투표 결과 동 안건은 부결됨<sup>27)</sup>

20) Guardian(2021. 11. 10), "Can anyone stop LV being taken over by Bain and why is it controversial?"

21) This is Money(2021. 11. 3), "You're taking LV members for fools: MPs blast bosses over 'insulting' £100 offer to policyholders in private equity takeover"

22) <https://www.change.org/p/prudential-regulation-authority-stop-the-demutualisation-of-lv?redirect=false>

23) Insurance ERM(2021. 11. 26), "FCA has not done enough to tackle LV demutualisation, MPs to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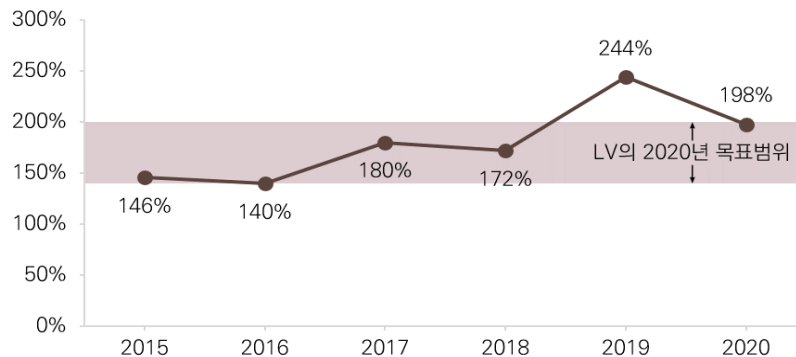
24) Insurance ERM(2021. 11. 4), "LV plans £111m capital distribution if Bain deal approved"

25) FCA(2021. 10. 26), "FCA statement on Liverpool Victoria"

26) LV(2021. 11. 22), "LV announces further detail on the 2020 strategic review and how the proposed Bain Capital transaction was carefully compared to other options"

- LV는 2017년과 2019년에 걸쳐 손해보험 부문을 Allianz에 매각해 자본을 크게 확충하였으며,<sup>28)</sup> LV의 지급여력비율이나 자기자본의 구성이 영국의 다른 보험회사들과 비교하여 낮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됨<sup>29)</sup>(〈그림 2〉 참조)
- 또한 경쟁사 Royal London의 인수제의를 채택했다면 상호회사로서의 조직구조를 유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채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이 충분치 않다며 LV의 경영진이 Bain Capital과의 거래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됨

〈그림 2〉 LV의 솔벤시II 지급여력비율



자료: LV 연례 보고서; LV(2021. 3. 26), "LV announces 2020 financial results"

○ LV의 매각에 대한 투표는 부결되었지만 영국 보험산업의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감독당국이 상호회사의 자본 확충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상호회사 후배주법(Mutuals' Deferred Shares Act, 이하, 'MDS법'이라 함)이 재조명됨

- 1996년 영국 보험시장에서는 상호회사가 50%의 비중을 차지했으나, LV에 앞서 Norwich Union, Standard Life, Scottish Widows 등 상호회사들의 매각 사례가 이어지며 현재는 10%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이는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30~50%의 보험회사가 상호회사인 것과 대조됨<sup>30)</sup>
- 영국에서 탈상호화가 이어지는 주요 원인으로 상호회사의 제한된 자본 확충수단이 지적되었으며,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상호회사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27) FCA가 회원과의 소통을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LV 회원의 단 15%인 174,240명만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 중 75%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될 수 있으나 69%만이 찬성하여 부결됨(Guardian(2021. 12. 10), "LV members block US private equity takeover"; Insurance ERM(2021. 12. 10), "Bain's acquisition of LV rejected, Royal London reapproaches")

28) 영국 상호금융회사 연합(Association of Financial Mutuals)의 최고경영자 Martin Shaw에 따르면 손해보험 부문 매각 전 LV는 영국 상위 3개 손해보험회사 중 하나였음

29) Financial Times(2021. 12. 8), "Where has that money gone? LV members question private equity sale as deadline looms"; Insurance ERM(2021. 11. 22), "LV says it is sub-scale with weak capital structure"

30) Insurance ERM(2021. 11. 16), "LV's demutualisation: what kind of capital(ism) do you want?"

- 글로벌 신용평가기관 S&P는 2020년 발간한 보고서에서 제한된 자본 확충수단이 LV에 대한 신용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힘<sup>31)</sup>
- 2015년에 제정된 MDS법은 상호회사로 하여금 주식회사와 평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자본 확충수단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실효성 있는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못함<sup>32)</sup>
  - MDS법은 상호회사로 하여금 후배주를 발행하여 기관 투자자의 투자를 받아 자본을 확충하면서도 상호회사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였음
  - 그러나 2018년 보수당이 집권한 정부는 상호회사의 후배주가 법인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MDS법을 시행하기 위한 후속 입법을 추진하지 않아 MDS법이 현재까지 시행되지 못함<sup>33)</sup>

○ 향후 LV는 소비자의 상호회사에 대한 선호도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매각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며, 영국 국회의원들은 재무부에 상호회사 관련 법규를 정식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함

- LV는 회원투표에서 나타난 소비자의 상호회사에 대한 선호도를 반영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을 유지하거나 다른 상호회사와의 합병으로 상호회사로서의 조직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임<sup>34)</sup>
  - Royal London은 LV의 일부 또는 모든 회원들이 Royal London의 회원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방안을 제안하였고 LV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100여 명의 영국 국회의원들은 영국 재무부에 보내는 서신에서 ① 상호회사의 자본확충 규제를 완화하고, ② 탈상호화 시 회원 보호를 강화하며, ③ 불필요한 탈상호화에 대한 유인을 제거하는 등의 관점에서 관련 법규를 정식 검토할 것을 요청함<sup>35)</sup>
  - 불필요한 탈상호화에 대한 유인과 관련하여 영국 상호금융회사 연합의 최고경영자인 Martin Shaw는 영국 현행법에서 상호회사가 되기는 어렵지만 탈상호화는 쉽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호회사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함<sup>36)</sup>
  - 그는 또한 공개유한회사의 지분 거래에 있어서는 각종 소비자보호 규제가 많은 데 비해 상호회사의 탈상호화에 있어서는 소비자보호에 대한 규제가 거의 부재한 상태이며, 상호회사에 대한 감독당국의 이해도와 관심이 떨어진다고 지적함
  - 이에 대해 영국 재무부 대변인은 영국 금융산업에서 상호회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상호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힘<sup>37)</sup>

31) Financial Times(2021. 12. 8), "Where has that money gone?" LV members question private equity sale as deadline looms"

32) Insurance ERM(2020. 12. 12), "Mutuals' deferred shares could have saved LV from demutualising"

33) 이후 브렉시트와 코로나19 사태로 영국 정부가 MDS법의 시행을 검토할 기회는 더욱 멀어짐

34) LV(2021. 12. 10), "LV announces next steps to determine future direction"

35) <https://twitter.com/GarethThomasMP/status/1467790963158532096>

36) Insurance ERM(2021. 11. 26), "FCA has not done enough to tackle LV demutualisation, MPs told"

37) Financial Times(2021. 12. 8), "Where has that money gone?" LV members question private equity sale as deadline looms"

#### 4. 대만 마이크로인슈어런스(Microinsurance)의 현황과 최근 동향

○ 2009년 7월 대만 정부는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위험보장 강화를 위해 보험회사의 마이크로인슈어런스 개발·판매를 허용함<sup>38)</sup>

- 대만 보험 전문잡지인 ‘현대보험’에 따르면 2006년 487만 대만인은 생명보험에 가입한 경험이 없으며, 이들 가운데 282만 명이 경제적 여력이 없어 생명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sup>39)</sup>
- 대만 보험회사가 개발한 마이크로인슈어런스는 정기보험, 상해보험, 실손의료보험 등의 형태로 판매되고 있으며 보험료와 보험금이 낮고 보험기간이 짧은 특징을 가지고 있음
  - 마이크로인슈어런스의 최고 보장금액은 정기보험은 50만 대만달러, 상해보험은 50만 대만달러, 실손의료보험은 3만 대만달러로 정해져 있으며, 보험기간은 1년으로 한정됨
  - 또한 마이크로인슈어런스는 사업비율 상한이 15%로 제한되고 있어 일반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것으로 평가됨
- 대만 마이크로인슈어런스의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은 10가지 특정 대상(그들의 가족 포함)을 포함하고 있음
  - ① 연소득이 35만 대만달러 미만 미혼자, ② 연소득이 70만 대만달러 미만 부부, ③ 원주민, ④ 어민, ⑤ 농민, ⑥ 사회복지자선단체 서비스 대상자, ⑦ 정부 보조금 지급 대상 가구, ⑧ 중저소득 가구, ⑨ 장애인, ⑩ 노인 생활급여 수령자

〈표 2〉 대만 마이크로인슈어런스의 주요 내용

| 특징                                                                                                                               | 상품 유형                                                                                                                                                             | 가입대상(가족 포함)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 고객: 경제적 취약계층</li> <li>• 상품구조: 상품구조가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움</li> <li>• 보험료 및 보험금: 소액</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년 만기 정기보험(사망, 완전 실능(失能) 보장)</li> <li>• 1년 만기 상해보험 (사고로 인한 사망, 실능 보장)</li> <li>• 1년 만기 실손의료보험 (사고로 인한 의료비 지급)</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연소득이 35만 대만달러 미만 미혼자(배우자가 있는 가족인 경우 부부의 연소득이 70만 대만달러 미만으로 한정)</li> <li>② 연소득이 70만 대만달러 미만 부부</li> <li>③ 원주민신분법상 원주민, 원주민 관련 단체 소속 회원과 서비스 대상자</li> <li>④ 어민 관련 단체 소속 회원, 어선 선원 신분을 가진 대만 어업종사자와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어업종사자</li> <li>⑤ 농민건강보험 가입자인 농민</li> <li>⑥ 사회복지자선단체 서비스 대상자</li> <li>⑦ 정부 보조금 지급 대상 가구</li> <li>⑧ 사회구조법상 구조 대상 중 중저소득 가구</li> <li>⑨ 장애인보호법상 장애인, 장애인 관련 단체 소속 회원과 서비스 대상자</li> <li>⑩ 노인복지법상 중저소득 노인 생활급여 수령자</li> </ul> |

자료: 台灣金融監督管理委員會, 認識微型保險(<https://www.ib.gov.tw/ch/home.jsp?id=217&parentpath=0,8,216>)

38) 台灣金融監督管理委員會, 業務主題, 專區, 微型保險, 認識微型保險

39) 現代保險(2006. 2), “487萬人一張保單都沒有等著被開發!”

○ 2014년부터 대만 정부는 마이크로인슈어런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각종 지원정책을 시행함

- (가입대상 확대) 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FSC)는 3차례에 걸쳐 가입대상을 기존의 8가지 특정 대상에서 10가지 특정 대상과 그들의 가족까지 확대하였음
  - 2014년 대만 FSC는 농민을 가입대상으로 포함시켰으며, 가입대상 중 ① 미혼자, ② 부부, ⑧ 사회구조법상 구조 대상 가구의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음<sup>40)</sup>
  - 또한 대만 FSC는 2018년에 마이크로인슈어런스 가입대상의 가족을, 2021년에는 노인 생활급여 수령자를 가입대상으로 추가하였음
- (판매혜택 제공) 대만 FSC는 보험회사가 마이크로인슈어런스를 적극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신상품 신고, 예금보험료, 해외투자 한도에 대해서 혜택을 제공함
  - (신상품 신고) 대만 FSC는 매년 보험회사의 마이크로인슈어런스 판매실적을 평가하여 마이크로인슈어런스 판매실적이 우수한 보험회사에 대해 허가 대상 신상품을 신고 절차만을 거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함<sup>41)</sup>
  - (예금보험료) 대만 보험회사는 지급여력비율과 경영관리성과 등급에 따라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데, 경영관리성과 평가지표 중 마이크로인슈어런스 판매실적이 우수한 보험회사에 대해 낮은 예금보험료를 부과함<sup>42)</sup>
  - (해외투자 한도) 대만 FSC는 매년 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한 상품구조를 평가하여 마이크로인슈어런스 판매실적을 포함한 상품구조 평가점수가 높은 보험회사에 대해 해외투자의 법정 한도인 45%보다 1% 더 높게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sup>43)</sup>
- (보험상품 홍보) 대만 정부 부처와 유관 기관·단체는 마이크로인슈어런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음
  - 대만 중앙 및 지방 정부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이크로인슈어런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음
  - 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회사는 각각 홈페이지에서 마이크로인슈어런스 관련 홍보 전용 페이지를 개설하였으며 각종 원주민 언어로 번역한 홍보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대만 사회복지자선단체도 마이크로인슈어런스 홍보 및 보험료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40) 가입대상 중 ① 1인 가족, ② 2인 가족의 최고 연소득은 각각 25만 대만달러, 50만 대만달러에서 35만 대만달러, 70만 대만달러까지 상향조정되었으며, ⑧ 사회구조법상 구조 대상 가구는 1인당 월평균 생활비가 소재 지역 월평균 최저 생활비 미만 가구에서 1인당 월평균 생활비가 소재 지역 월평균 최저 생활비의 1.5배 미만 가구까지 확대됨

41) 台灣金融監督管理委員會, 「保險商品銷售前程序作業準則」, 제21-1조 3항(<https://law.moj.gov.tw/LawClass/LawAll.aspx?pcode=G0390044>)

42) 台灣金融監督管理委員會, 「人身保險及財產保險安定基金計提標準」, 제4조(<https://law.moj.gov.tw/LawClass/LawAll.aspx?pcode=G0390090>)

43) 台灣金融監督管理委員會, 「保險業辦理國外投資管理辦法」, 제15조 제8항(<https://law.fsc.gov.tw/LawContent.aspx?id=GL003187>)

- 2021년 11월 기준 28개 대만 보험회사는 마이크로인슈어런스를 판매하고 있으며, 마이크로인슈어런스의 보유계약 가입자 및 보험가입금액은 각각 67만 명, 1,903억 대만달러에 달함<sup>44)</sup>
  - 현재 대만에서 15개 생명보험회사, 13개 손해보험회사가 마이크로인슈어런스를 판매하고 있으며, 대만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의 마이크로인슈어런스 가입자는 각각 42만 명, 26만 명임
  - 마이크로인슈어런스의 보험금 지급 건수 및 지급금액은 각각 1,713건, 2.8억 대만달러임
  - 대만 마이크로인슈어런스 가입자는 원주민(38%), 중저소득 가구(24%), 장애인(21%), 사회복지자선단체 서비스 대상자(12%)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남<sup>45)</sup>

〈표 3〉 대만 마이크로인슈어런스 판매 현황(2021년 11월 기준)

(단위: 만 명, 억 대만달러, 건)

| 보험회사         | 가입자 수 | 보험가입금액 | 지급 건수 | 지급금액 |
|--------------|-------|--------|-------|------|
| 생명보험회사(15개사) | 41.5  | 1,351  | 1,437 | 0.4  |
| 손해보험회사(13개사) | 25.8  | 552    | 276   | 2.4  |
| 합계           | 67.3  | 1,903  | 1,713 | 2.8  |

자료: 台灣保險事業發展中心, 微型保險專區(<https://www.tii.org.tw/tii/insurance/insurance2>)

- 최근 대만 FSC는 마이크로인슈어런스의 보편화를 위해 추가적인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sup>46)</sup>
  - 추가적인 활성화 방안으로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 확대,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의 홍보 강화, 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 예산 편성 및 온라인 플랫폼 개설 등이 제안됨

## 5. 일본의 치매 예방 보험상품 개발 확산 현황

- 최근 일본에서는 보험회사들이 기존의 사후적 보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예방적 기능의 치매 보험상품을 연이어 출시하는 등 질병 조기발견과 예방에 대한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고 있음
  - 이에 일본 보험회사의 치매보험 도입 배경과 상품 개발 변천, 치매 예방적 기능 상품인 경도인지장애 보장상품의 최근 개발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함

44) 台灣保險事業發展中心, 微型保險專區(<https://www.tii.org.tw/tii/insurance/insurance2>)

45) 台灣金融監督管理委員會(2021. 10), “微型保險推動成效與展望”

46) 台灣行政院(2021. 10), “微型保險推動成效與展望”

- 일본은 치매 인구가 2012년 462만 명에서 2050년 1,314만 명으로,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치매 인구 비중이 2012년 15%에서 2050년 27%로 전망되는 등 치매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임<sup>47)</sup>
  - 이에 일본 정부는 치매 대책에 관한 민간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하여 치매 조기 발견, 예방, 치료, 요양 등과 관련한 상품 및 서비스 분야에 민간산업의 적극적인 시장 진출을 권장 및 지원하고 있음
- 이에 일본 보험회사들은 2016년 타이요생명이 치매 진단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치매보험 상품을 개발한 이후 현재 12개 이상의 회사가 치매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 일본에서 치매보험은 1985년에 외국사인 AFLAC가 치매로 인한 간병 상태를 보장하는 ‘치매간병보험’을 판매하였으나 치매 관리에 관한 수요 부족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바 있음<sup>48)</sup>
  - 이후 치매 인구 증가에 따라 2016년 타이요(太陽)생명이 처음으로 주계약에서 치매를 보장하는 치매보험 상품을 개발한 이후 2018년에 다이이치(第一)생명, 도쿄해상, 2020년부터 니혼생명과 메이지야스다생명 등이 주계약 또는 특약상품으로 치매보장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 최근에는 보험회사들이 치매의 조기발견 및 예방적 치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치매보험 상품에서 보장 기능을 확장하거나 특약 형태로 경도인지장애 보장상품을 개발하여 판매를 확대하고 있음
  - 경도인지장애(Mild Cognitive Impairment; MCI)란 치매가 되기 바로 전단계로 기억력이나 기타 인지 기능 저하가 객관적인 검사에서 확인될 정도로 감소한 상태를 말하며, 치매 발병 고위험군으로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상적으로 중요한 단계임<sup>49)</sup>
  - 일본 후생노동성 조사에 의하면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 치매를 조기 발견하여, 치료를 시작할 경우 5년 후에 약 38.5%가 건강을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나 치매의 조기발견과 예방이 최근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sup>50)</sup>
- 이에 2018년 손보히마와라생명은 일본 보험업계 처음으로 주계약에서 경도인지장애와 치매를 동시에 보장하는 간편심사형 치매보험 상품을 개발함<sup>51)</sup>
  - 동 상품은 경도인지장애와 치매 진단 시 일시금을 보장하고, 골절치료와 재해 등을 주로 보장하는 상품이며, 추가적으로 치매 기초지식 정보제공, 인지기능 셀프 체크 툴, 간병시설 소개 서비스를 제공함
  - 다만,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해이와 회사 손익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경도인지장애와 치매 보장은 면책기간(180일)을 두거나 최저 5만 엔을 보장하는 등 보장 기간과 보장액을 일부 제한하고 있음

47) 이상우(2019), 「일본 고베시의 치매사고 보상대책과 시사점」, 『KIRI 고령화리뷰』, 보험연구원

48) ニッセイ基礎研究所(2015), 介護保険の支払要件

49)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http://www.snuh.org/health/nMedInfo/nList.do>)

50) 厚生労働省(2019), 社会保障審議会介護保険部会「認知症施策の総合的な推進について(参考資料)」

51) 損保ジャパン日本興亜ひまわり生命 News Release(2018. 7. 19)

- 동 상품은 예컨대 50세 남성이 종신납 상품에 가입하여 4,100엔(일반심사보험형 3,050엔)을 납입할 경우 5만 엔의 경도인지장애와 100만 엔의 치매보험금 등을 보장받을 수 있음
- 니혼생명은 치매 예방과 발병 후 중증화 예방을 위해 주계약 치매보장 상품과 치매 관련 서비스를 번들형으로 제공하는 ‘인지증 서포트 플러스’를 개발하여 2020년부터 판매하고 있음<sup>52)</sup>
- 동 상품은 가입자가 경도인지장애와 치매 진단을 받을 경우 일시금을 지급하는 치매보험 상품으로 본사 또는 협력회사가 제공하는 치매 관련 토털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상품임
    - 서비스 주요 내용은 치매 교육, 지정대리청구 제도 안내, GranAge Star<sup>53)</sup> 유상 제공, 보행운동 프로그램, 치매 조기발견 앱, 치매·간병 전화 상담, 지역별 청구 상담서비스, 치매 전용 웹사이트 등임
  - 경도인지장애 보장은 일정한 면책기간(1년)을 두고, 지급액을 치매보험금의 10%로 제한하고 있음
  - 동 상품은 예컨대 50세 남성이 종신납 상품에 가입하여 7,135엔을 납입할 경우 50만 엔의 경도인지장애와 500만 엔의 치매보험금 또는 사망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음
- 메이지야스다생명은 주계약인 종신의료보험에 추가적으로 경도인지장애와 치매 보장을 부대할 수 있는 특약상품인 ‘인지증케어 MCI플러스’를 개발하여 2020년부터 판매하고 있음<sup>54)</sup>
- 동 상품은 경도인지장애와 치매 진단 시 일시금을 보장하는 경도인지장애특약과 인지증보장특약으로 각각 구성되고, 추가적으로 치매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서비스 주요 내용은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인지증 리스크 평가, 질병 리스크 예측, 간단 뇌검사 결과를 기초로 한 인지증 개선 지도, 치매 리스크 모니터링 검사와 위탁업체 의사 소개 앱 제공, 치매 발병 후 24시간 건강상담 서비스, 치매 계약자에게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필요 서류 준비 및 작성 등 지원, 간병시설 및 간병 복지기구 소개, 각종 수발 서비스 소개 등임
  -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보장 특약의 면책기간은 2년으로 동기간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 납입보험료를 지급하고 특약이 무효 처리됨
  - 동 상품은 예컨대 50세 남성이 종신납 경도인지장애특약과 인지증보장특약에 가입하여 각각 377엔과 1,844엔을 납입할 경우 20만 엔의 경도인지장애와 200만 엔의 치매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음
- 스미토모생명도 경도인지장애와 치매를 동시에 보장하는 ‘인지증보장특약(인지증 플러스)’을 개발하여 2020년부터 판매하고 있음<sup>55)</sup>

52) 日本生命 News Release(2020. 3. 18)

53) 니혼생명이 고령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생전 서비스(신원보증, 생활지원, 임의후견)와 사후 서비스 브랜드명임

54) 明治安田生命 News Release(2020. 1. 24)

55) 住友生命 News Release(2020. 2. 26)

- 동 상품은 메이지아스다생명과 달리 하나의 특약상품에서 경도인지장애와 치매 진단 시 일시금을 보장하는 상품이며, 추가적으로 치매 예방 및 대응 서비스와 건강증진프로그램(Vitality) 서비스를 제공함
-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보장 특약의 면책기간은 180일임
- 동 상품은 예컨대 50세 남성이 종신납 상품에 가입하여 1,430엔을 납입할 경우 10만 엔의 경도인지장애와 100만 엔의 치매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음
  - 또한, Vitality 이용(이용료 880엔) 시 특약보험료가 약 17% 할인되고, 가입 후 건강 개선 시 최대 30% 보험료 할인이 제공됨

○ 다이이치(第一)생명그룹 자회사인 네오퍼스트생명은 치매 예방을 위하여 치아 건강상태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는 치매보험 특약상품을 일본에서 처음 개발하여 2021년 11월부터 판매하기 시작함

- 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에서 치아 수가 10개 이하인 고령자(틀니를 하지 않음)가 20개 이상인 고령자보다 치매 발병이 1.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치아 건강과 치매 발병이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남<sup>56)</sup>
- 동 상품은 치매를 보장하는 무해약환급형 인지증보장보험에 경도인지장애 진단 시 일시금을 보장하는 경도인지장애보장 특약상품을 부대할 수 있으며, 70세 이후 계약자의 잔여 치아가 20개 이상일 경우 주계약(사망보장 제외)과 특약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함
- 경도인지장애·치매 보장의 면책기간은 180일이며, 70세 이상 고령자 가입 시 할인이 제공되지 않음
- 추가적으로 온라인에서 치아 건강 유지 및 개선을 지원하는 치아 건강 안내 서비스를 제공함
- 동 상품은 예컨대 50세 남성이 종신납 무해약환급형 인지장애보험과 경도인지장애특약에 가입하여 2,719엔(각각 1,898엔과 821엔)을 납입할 경우 20만 엔의 경도인지장애와 200만 엔의 치매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음
  - 치아 건강 할인 혜택은 계약자 치아가 예컨대 70세 이후 20개 이상 남아 있을 경우 70세부터 월 보험료가 550엔 할인되어 2,169엔 수준으로 낮아짐

56) 네오퍼스트生命保険 News Release(2021. 11. 22)

〈표 4〉 일본 보험회사의 경도인지장애 보장상품 개발 사례

| 연도       | 손보<br>히마와리생명  | 니혼<br>(日本)생명 | 메이지야스다<br>(明治安田)생명 | 스미토모<br>(住友)생명 | 아사히<br>(朝日)생명 | 네오퍼스트<br>생명  |
|----------|---------------|--------------|--------------------|----------------|---------------|--------------|
| 상품명      | 미소 보호<br>치매보험 | 인지증<br>서포트+  | 인지증케어<br>MCI+ 특약   | 인지증보장<br>특약    | 경도인지장애<br>특약  | 경도인지장애<br>특약 |
| 개발시기     | 2018          | 2020         | 2020               | 2020           | 2020          | 2021         |
| 가입 연령    | 20~80세        | 40~75세       | 50~85세             | 18~75세         | 40~70세        | 40~85세       |
| 간병보장 유무  | 특약에서 보장       | 특약에서 보장      | -                  | -              | -             | -            |
| 치매보장 유무  | 보장            | 보장           | -                  | -              | -             | -            |
| MCI보장 유무 | 보장            | 보장           | 보장                 | 보장             | 보장            | 보장           |
| 지급 방법    | 일시금/연금        | 일시금          | 일시금                | 일시금            | 일시금           | 일시금          |
| 면책기간     | 180일          | 1년           | 2년                 | 180일           | 90일           | 180일         |

자료: 각 회사 보도자료 등 공시자료를 기초로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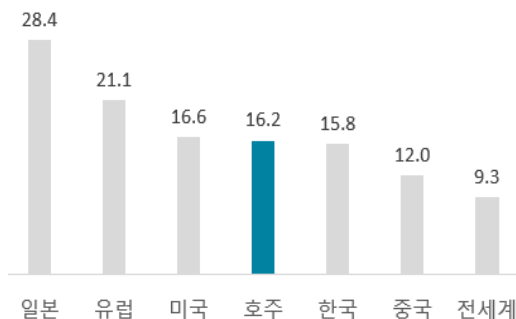
## 1. 호주의 고령화 현상

○ 호주 고령층(65세 이상 인구)은 전체 인구의 16.2%로 미국 및 한국과 유사한 수준이며, 호주는 2021년 현재 고령사회에서 2037년경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sup>1)</sup>

- 2020년 호주 전체 인구 약 2,560만 명 중 65세 이상 인구는 약 416만 명으로 16.2%의 비중을 차지함
- 호주와 유사한 고령인구 비중을 보이는 국가로는 미국(16.6%)과 한국(15.8%) 등이 있음
- 호주는 2016년 고령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를 초과하며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2037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전망이다<sup>2)</sup>

〈그림 1〉 2020년 주요국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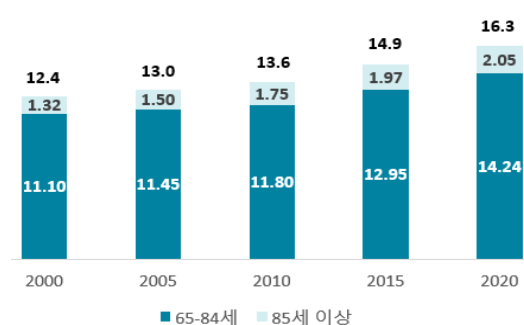
(단위: %)



자료: 세계은행(<https://data.worldbank.org>)

〈그림 2〉 호주 고령층 비중 추이

(단위: %)



자료: 호주 통계청<sup>3)</sup>

1) <https://data.worldbank.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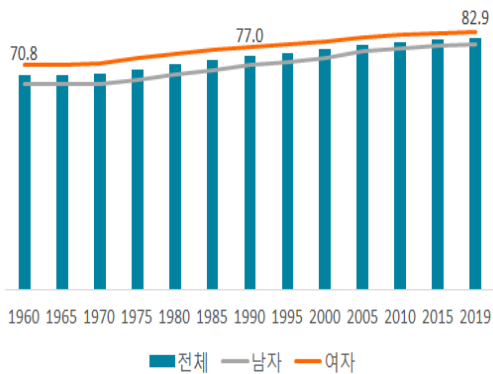
2) Government of NSW(2020. 11), "The ageing demographic of the Australian workforce: prevention of work health and safety harm"

3) <https://www.abs.gov.au/articles/twenty-years-population-change>

○ 현재 호주 출생 인구의 기대수명은 약 82.9세이며 인구 고령화로 인해 매년 노년부양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최근 World Bank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호주 출생 인구의 기대수명은 남성이 80.9세, 여성이 85세로 한국과 유사한 수준<sup>4)</sup>으로 나타남
- 호주 중위연령은 2000년 35세에서 2020년 38세로 증가하였고, 이는 20년 사이에 3년이 증가한 수치임
  - 호주 여성 1인당 출산율은 1960년대 초반 3.5명에서 현재 1.8명으로 감소함<sup>5)</sup>
- 현재 호주 통계청은 인구 고령화로 인해 고령자 복지제도인 Aged Care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임<sup>6)</sup>
  - 2019년에 호주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한 명을 부양하기 위해 4.2명의 노동가능 인구(15~64세)가 필요했지만 2060년경 이 같은 수치는 2.7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호주에서 생산가능 연령 기반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함

〈그림 3〉 호주 기대수명 추이



자료: 세계은행(<https://data.worldbank.org>)

〈그림 4〉 호주 부양인구 및 노동가능 인구의 연평균 성장률 추이(%)



자료: 호주 통계청<sup>7)</sup>

4) 한국 전체 인구의 기대 수명은 83.2세이며, 남성이 80.3세, 여성이 86.3세임

5) Parliamentary Budget Office(2019. 2), "Australia's ageing population – understanding the fiscal impacts over the next decade"

6) [https://www.voanews.com/a/economy-business\\_aging-population-challenge-australian-finances-future-decades-warns-report/6207553.html](https://www.voanews.com/a/economy-business_aging-population-challenge-australian-finances-future-decades-warns-report/6207553.html)

7) <https://www.abs.gov.au/articles/twenty-years-population-change>

## 2. 호주 정부의 인구고령화 대응

- 호주 정부의 인구 고령화 지원책은 크게 ① 노후소득 보장, ② 돌봄 지원 및 건강관리로 구분할 수 있음

### 가. 노후소득 보장

- 호주 정부는 고령층의 노후소득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3층 구조로 이뤄진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제공함
  - 호주의 노후소득 보장체계는 노령연금(1층), 퇴직연금(2층), 개인연금(3층)으로 구성되어 있음
    - 1층은 빈곤해소를 위한 비기여 이체방식의 노령연금, 2층은 고용주가 근로자를 위해 매월 적립하는 퇴직연금, 3층은 개인이 임의적으로 가입하는 개인연금임
- 3층 구조 중 1층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은 호주 정부가 빈곤예방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회부조형 공적연금으로 소득과 자산 기준 충족 시 66세 이후부터 지급됨
  - 호주의 노령연금은 1909년 시행된 이래 세금 부담자와 급여 수급자가 일치하지 않는 비기여(Non-contributory) 방식으로 운영됨
  - 노령연금 수급 조건은 일반적으로 호주 내 거주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인 66세 이상<sup>8)</sup>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며 일정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함<sup>9)</sup>
    - (소득) 독신의 경우 2주당 소득이 2,115호주달러(연간 약 54,990호주달러) 이상이거나, 부부의 경우 2주당 합산 소득이 3,237호주달러(연간 약 84,167호주달러) 이상이면 노령연금을 일체 수령할 수 없음
    - (자산) 유주택자 독신의 경우 자산이 593,000호주달러(무주택자 독신은 809,500호주달러) 이상이고, 유주택자 부부의 경우 합산 자산이 891,500호주달러(무주택자 부부는 1,108,000호주달러) 이상이면 노령연금을 일체 수령할 수 없음
  - 노령연금 최대 지급액은 독신은 2주 기준 약 968호주달러(연간 약 25,155호주달러)이며, 부부는 2주 기준 약 1,459호주달러(연간 약 37,924호주달러)임<sup>10)</sup>

8) 노령연금 수급 연령은 출생년월에 따라 달리 적용됨. 1954년 1월 1일~1955년 6월 30일생의 경우 66세 이후부터, 1955년 7월 1일~1956년 12월 31일생의 경우 66.5세부터, 1957년 1월 1일생 이후의 경우 67세 이후부터 수급 자격이 주어짐

9) <https://www.superguide.com.au/in-retirement/age-pension-rates>

10) <https://www.superguide.com.au/in-retirement/age-pension-rates>

- 호주 정부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연금수혜자 카드(Pensioner Concession Card), 양로우대 카드(Senior Cards), 시니어 건강 카드(Commonwealth Seniors Health Card)의 지급을 통해 의료, 교통 및 공과금 납부 시 할인혜택을 제공함<sup>11)</sup>
  - 연금수혜자 카드는 노령연금 수급자나 호주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 지급 기관인 Centrelink로부터 각종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통비, 공과금, 의료비 납부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임
  - 양로우대 카드는 60세 이상 고령층이며 주당 20시간 미만을 일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통비와 일부 상품 구매 및 서비스 이용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임
  - 시니어 건강 카드는 노령연금 수급자 연령 기준과 소득 기준을 충족하나 Centrelink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약제비와 진료비 납부 시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카드임
- 호주 정부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크게 연금 대출(Pension Loans Scheme)과 선지급 제도(Advance payment)로 구분됨
  - 연금 대출은 고령층의 은퇴 후 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부동산을 담보로 정부가 대출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수혜자는 최대 노령연금액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금으로 받을 수 있음
  - 선지급 제도는 고령자가 즉시 현금이 필요한 경우 이를 충당하기 위해 연금 지급액의 일부를 선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나. 돌봄 지원 및 건강관리

- 호주 정부는 고령층의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광범위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 고령자 복지 정책 Aged Care<sup>12)</sup>를 운영하고 있음<sup>13)</sup>
  -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고령층으로 정부의 허가를 얻은 기관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호주 정부는 연간 약 215억 호주달러(약 19조 원)를 Aged Care 운영에 사용함
    - 호주 정부가 규제자이자 재원 공급처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며, 서비스 제공자는 비영리단체, 정부기관, 민간영리단체와 같은 기관으로 이들은 정부의 승인하에 지원금을 받아 서비스를 제공함<sup>14)</sup>
- Aged Care 종류는 ① 재가노인 돌봄(Care at home), ② 요양시설 돌봄(Residential care), ③ 유연방식 돌봄(Flexible care)으로 구분됨

11) <https://moneysmart.gov.au/retirement-income/age-pension-and-government-benefits>

12) 호주에서 Aged Care라 불리는 고령자 복지정책은 OECD에서는 일반적으로 Long-term Care, 영국에서는 Social Care로 불림

13) Parliamentary library(2021. 4. 30), "Aged care: a quick guide"

14) 대다수의 서비스 제공자는 비영리 단체이며, 이는 종교단체, 자선단체 및 지역사회 기반 각종 기관을 포함함

- 재가노인 돌봄은 ‘재가노인 지원서비스(CHSP)’<sup>15)</sup>와 ‘재가노인 복지서비스(HCP)’<sup>16)</sup>로 구성됨
  - 재가노인 지원서비스(CHSP)란 65세 이상 고령자<sup>17)</sup>이거나 노숙자 또는 노숙 위험이 있는 저소득 고령층<sup>18)</sup>의 재가생활 편의를 위해 각종 활동(집안일, 자택 수리·유지, 식사, 건강서비스, 간호 활동)을 포함하는 기초적 수준의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수급자는 1인당 연간 약 2,949호주달러의 지원을 받음
  - 재가노인 복지서비스(HCP)란 재가노인 지원서비스(CHSP)보다 넓은 포괄적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각 패키지는 개인의 수요에 맞게 1단계(기초적 돌봄)부터 4단계(높은 수준의 돌봄)까지 맞춤형으로 지원됨<sup>19)</sup>
- 요양시설 돌봄은 자택에서 거주할 수 없는 고령층이 전문적인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함
  - 요양시설 이용자는 세탁, 식사, 간호, 의료 서비스 등을 지원받으며, 호주 정부는 거주자 한 명당 연간 약 69,055호주달러를 지원함
  - 이용자 또한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거주자는 상한액이 약 54호주달러인 기본 일일 이용료(Basic daily fee)<sup>20)</sup> 외에 추가금(숙박비, 서비스 옵션 추가비 등)을 납부하게 됨
- 유연방식 돌봄은 재가노인 돌봄이나 요양시설 돌봄 외의 다른 접근이 필요한 고령인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아래 3가지 종류가 있음
  - 전환치료돌봄(Transition care): 고령자가 퇴원 시 최대 12주간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고령자가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대신 재가하여 생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단기회복치료돌봄(Short-Term Restorative Care; STRC): 전환치료돌봄이 고령자의 퇴원 후 즉각적인 돌봄을 지원하는 것과 달리, 단기회복치료돌봄은 환자가 퇴원하고 6개월 이후부터 서비스가 제

15) CHSP: Commonwealth Home Support Programme

16) HCP: Home Care Package

17) 단, 원주민이나 토레스 해협 제도(Torres Strait Islands) 주민일 경우 50세 이상을 의미함

18) 일반적으로 50세 이상을 의미하지만, 원주민이나 토레스 해협 제도 주민일 경우 45세 이상을 의미함

19)

| 패키지 단계 | 돌봄 수준 | 연간 지원액       |
|--------|-------|--------------|
| 1단계    | 기초적   | 약 9,000호주달러  |
| 2단계    | 낮음    | 약 15,900호주달러 |
| 3단계    | 중간    | 약 34,500호주달러 |
| 4단계    | 높음    | 약 52,400호주달러 |

20) 기본 일일 이용료는 식비, 전기료, 세탁비 등이 포함된 값으로 상한액이 독신 기본 노령연금(Single Basic Age Pension)의 85%로 정해짐. 계산 방식은 독신 기본 노령연금 최대치 882.20호주달러×0.85/14일=53.5호주달러로 산출함

공되며 최대 8주간 이뤄지는 회복 치료로 전환치료돌봄과 같이 고령자의 재가 생활을 목적으로 함  
 - 다목적지원프로그램(Multi-Purpose Services; MPS): 독립형(Stand-alone) 병원이나 요양시설이 부족한 농촌 혹은 외딴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를 위한 통합적 건강 및 영양 돌봄 방식임

○ 호주 정부는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인 메디케어를 통해서도 고령층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메디케어는 국공립병원 및 사립병원에서 대부분의 의료 서비스(진료비, 입원치료 등)를 저가 혹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정신질환, 안과, 물리치료 등의 분야는 일부 보장되지만 치과는 보장하지 않음<sup>21)</sup>
  - 메디케어에서 일부만 보장하거나 보장하지 않는 항목은 민영건강보험에서 보장하고 있으며 민영건강보험 또한 호주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됨
- 메디케어는 영주권자 이상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면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함

○ 호주 정부는 공보험인 메디케어를 보완하기 위해 민영건강보험과 공·사 협력을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구하고 있음

- 호주 민영건강보험은 공보험인 메디케어에서 일부만 보장하는 서비스(치과, 안과, 물리치료 등)를 보장하고 가입자는 치료비용(입원 치료비용)과 의사 선택권<sup>22)</sup>을 가질 수 있음
- 호주 정부는 민영건강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재정적 유인책을 사용함
  - 호주 정부는 연간 개인소득이 90,000호주달러 이상인 고소득자 중 민영건강보험 미가입자에 대해 메디케어 보험료의 1~1.5%를 추가하여 부과하는 메디케어 추가부담금 제도(Medicare Levy Surcharge; MLS)를 운영함
  - 호주 정부는 31~65세 연령자가 민영건강보험을 가입·유지하지 않을 경우 보험 가입시점까지 보험료를 연간 2%씩 가산하여 책정하는 생애주기의료보장 부담금(Lifetime Health Coverage loading) 제도를 두고 있으며 젊은 연령의 민영건강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음

○ 또한 호주 정부는 다음의 의료 복지제도를 통해 고령층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있음

- Medicare Safety Net은 환자가 의사 진료를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을 사용할 경우 자기부담금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임
- PBS Safety Net은 환자가 약제비로 일정 금액 이상을 사용한 경우 이 같은 추가 부담을 경감시키는 제도임
- Free Vaccination은 고령층이 독감 및 폐렴과 같은 질병에 대해 무료로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21) 메디케어의 보장 내용은 메디케어 급여목록(Medicare Benefits Schedule; MBS)에서 확인할 수 있음

22) 메디케어의 경우 병원에서 담당의사를 지정하지만 민영건강보험 가입자는 수술 시 원하는 의사를 지정할 수 있음

- Free Annual Health Assessment는 75세 이상 호주인이 1년에 한번 무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sup>23)</sup>
- Free Home Medication Review는 자가에 거주하며 하루 5개 이상의 약을 복용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호주 정부가 약 처방과 사용에 관한 검토를 도와주는 제도임

### 3. 호주 보험산업의 인구고령화에 대한 대응

#### 가. 노후소득 보장

- 호주는 사적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공적연금을 대체하는 수준의 높은 보장성을 보임
  - 호주는 사적연금이 공적연금을 대체하는 연금체계(공적연금 대체형)로 사적연금이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수준의 한국형 연금체계(공적연금 보완형)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음
- 호주의 사적연금에서는 특히 퇴직연금의 보장 정도가 높으며, 이는 민간이 운영하지만 호주 정부가 감독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 호주는 1992년부터 퇴직연금에서 사용자 부담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고용주 기여율은 3~4%에서 현재 10%로 점차 증가하여 현재 호주 65세 인구 대부분이 퇴직연금의 수혜를 받고 있음
  - 호주 퇴직연금 적립금 비중은 GDP 대비 175%에 이르고 있으며<sup>24)</sup> 국민경제적 역할이 높지만 이에 비해 노령연금과 개인연금은 절대 금액이나 세제혜택 등의 측면에서 노후소득 보장 역할이 미흡함
  - 호주 퇴직연금은 ① 가입의무화, ② 세제 혜택 확대, ③ 관리감독체계 강화, ④ 중도 인출 제한과 같은 규정을 통해 가입자와 적립금 기반을 확대하고 있음
    - (가입의무화) 퇴직연금은 민간에서 운영하지만 호주 정부가 가입의무화 등을 통해 퇴직연금체계를 감독하고 있으며 정규직뿐 아니라, 국회의원, 예술인, 운동선수 및 배우자 등도 가입대상임
    - (세제 혜택 확대) 호주는 가입자의 속성별(연령별, 소득별) 연금세제 차별화 등을 통해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고 있음
    - (관리감독체계 강화) 퇴직연금은 근로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기금형 지배구조<sup>25)</sup> 형태로 운영되고

23) 경우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이 일정부분 발생할 수도 있음(<https://moneysmart.gov.au/retirement-income/age-pension-and-government-benefits>)

24) <https://www.investordaily.com.au/superannuation/48722-super-assets-rise-to-175-of-gdp>

25) 호주에서는 가입자 특성을 반영하여 퇴직연금 기금을 기업형 기금(Corporate funds), 산업형 기금(Industry funds), 공적 기금

있고 퇴직연금 수탁자와 근로자 간 이해상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호주 정부가 감독하고 있음

- (중도 인출 제한) 퇴직연금은 55세 이전 사망이나 영구적 장애, 심각한 재정궁핍 등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중도 인출이 엄격히 제한됨

○ 현재 호주의 노후소득 보장에서 보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령인구 지출 비용 총액의 약 5%로 미미한 수준이며 호주의 은퇴자를 위한 금융시장은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실정임

- 호주 65세 이상 고령인구 지출 비용은 정부 53%, 가족 10%, 개인 저축 32%, 보험산업이 약 5%의 비중을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sup>26)</sup>
  - 호주의 고령층은 상당수가 주택을 활용한 노후 현금 흐름과 퇴직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이에 비해 보험산업의 역할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 호주인은 퇴직연금 적립단계에서는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선택 범위가 넓지만 은퇴 이후에는 이러한 선택폭이 넓지 않고 소수의 금융기관이 제한된 금융상품만을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호주 AIA는 은퇴자를 위해 매월 일정한 소득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저위험 연금상품<sup>27)</sup>과 수익금이 발생하는 투자 형태의 보험채권(Insurance bonds)<sup>28)</sup> 등을 판매하고 있음

- 정기연금은 확정 수입을 보험계약자가 선택한 기간(1~30년) 동안 연금으로 지급 받는 상품으로 만기 시 구매가격의 0~100%가 일시불로 반환됨
- 종신연금 중 즉시연금 가입자는 연금 기간 첫해부터 종신까지 정기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고, 보험계약자는 보장기간을 선택하는데, 동 기간 내 사망할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사망보험금이 지급됨
- 종신연금 중 이연연금 가입자는 이연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종신까지 정기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기대수명으로 설정된 보장기간 내 보험계약자가 사망할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사망보험금이 지급됨
- 은퇴자를 위한 투자 형태의 보험채권은 소비자가 금액을 인출하거나 소유권을 변경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보유 요건<sup>29)</sup> 등을 충족할 경우 세제혜택이 있는 상품임<sup>30)</sup>

○ 이 밖에도 Allianz Retire+와 MLC 등은 은퇴자가 퇴직 후에도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할 수 있도록

---

(Public sector funds), 리테일 기금(Retail funds), 자율관리 기금(Self-managed superannuation funds)으로 나누어 운영함

26) 호주에서 고령인구 부양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 총액은 연간 2,000억 미국달러이며, 65세 인구당 평균 지출액은 구매력평가(PPP) 기준 4만 4,000미국달러로 한국의 2만 2,000미국달러 대비 두 배 정도 높음(<https://www.swissre.com/dam/jcr:195498df-a3ce-4883-9e7b-47c6f379ddaf/Who%20pays%20for%20ageing%20-%207%20new%20markets%20update.pdf>)

27) <https://www.aia.com.au/en/individual/retirement-investment/annuities.html>

28) 투자 펀드와 보험의 특성을 결합한 상품으로 안정성과 세제혜택이라는 장점을 가짐

29) 10년 이상 보유하고 125%를(금년도 추가 투자금이 전년도 투자 총액의 125%를 초과하지 않는 상태)을 준수하는 경우를 의미함

30) <https://www.aia.com.au/en/individual/retirement-investment/investment-growth-bonds.html>

투자 목적의 다양한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 Allianz Retire+는 Future Safe라는 상품을 통해 투자자가 선택한 위험 정도에 따라 투자를 대행하며 1년 고정금리 옵션을 제공하는 등 은퇴자를 위한 상품 개발에 특화된 회사임<sup>31)</sup>
- MLC는 MasterKey Pension Fundamentals 상품을 통해 시장 침체 시에도 투자자 자본을 보호하는 옵션을 도입하였고, Wrap Retirement Solutions 상품을 통해 광범위한 투자 옵션을 제공함<sup>32)</sup>

## 나. 돌봄 지원 및 건강관리

○ 호주에서 고령층에 대한 돌봄 및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로는 ① Aveo Healthcare, ② Estia Health, ③ Japara Healthcare, ④ Regis Healthcare 등이 있음

○ Aveo Healthcare는 실버타운에 특화된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요양시설과 단기돌봄(Respite care) 서비스를 제공함

- (실버타운) Aveo Healthcare는 공동의 커뮤니티 생활을 즐기면서 개인 주택에서 독립적으로 살기 원하는 고령층이 이용하는 시설인 실버타운 운영에서 30년 이상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
  - 현재 실버타운에는 8만 4,000여 명의 거주자가 있으며, 2025년경 38만 2,000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Aveo Healthcare 실버타운은 개인 아웃도어 공간과 차고가 있는 단독형(Units/Villas)과 발코니가 있는 아파트형, 각종 서비스가 포함된 아파트형(Serviced apartment)이 있음
  - 현재 32개의 실버타운이 운영되고 있고 향후 신규로 12개를 추가 오픈할 예정임
- (요양시설) Aveo Healthcare는 고령자가 자택에서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없고 일상생활을 위해 상시 도움이 필요할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요양시설 14개를 운영함
  - 요양시설은 청소, 요리, 세탁과 같은 기초 서비스를 비롯하여 의료 서비스, 목욕이나 옷 입기와 같은 개인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적·정서적 유대감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을 제공함
- (단기돌봄) 주 간병인이 휴식이 필요한 경우 혹은 고령자가 퇴원 후 향후 거주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돌봄이 필요할 때 단기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1일 단기돌봄 서비스 비용은 최소 49호주달러 정도임(수수료와 요금은 각 사업자마다 상이함)
  - 'Freedom Respite Care' 프로그램은 거주자가 개인 아파트(빌라)에서 동반자와 거주하며 반려동물을 키우며 커뮤니티 내 시설을 이용하고 필요한 경우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임

31) <https://www.allianzretireplus.com.au/future-safe/overview.html>

32) <https://www.mlc.com.au/personal/retirement/products>

○ Estia Health는 요양시설에 특화하여 호주 전역에서 68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

- (장기돌봄) 장기간에 걸친 요양서비스가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임
- (단기돌봄) 재가노인, 실버타운 및 요양시설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함
- (치매돌봄) 치매환자가 안정적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정원과 같은 공간을 마련하고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센터를 운영함
- (완화치료돌봄) 말기 환자나 완치 가능성이 없는 고령층이 이용하는 서비스로 환자의 영적·문화적·감성적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개인 일정이 정해짐
- (긴급돌봄) 고령자가 예기치 못한 사고(예: 낙상 사고)를 당했거나 주 간병인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등 단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임

○ Japara Healthcare는 호주 전역에 5개의 실버타운과 50여 개의 요양시설을 보유하고 있음

- (실버타운) 공동의 편의시설과 정원을 공유하며 이웃 및 방문자와 교류가 가능한 공간으로 추가 옵션을 통해 청소, 가드닝, 식사 배달, 세탁 서비스 등을 신청할 수 있음
  - Japara Healthcare가 운영하는 실버타운은 동 회사가 운영하는 요양시설과도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상시돌봄이 필요할 경우 요양시설 서비스 제공자가 실버타운에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음
- (요양시설) 호주 전역에 50여 개의 요양시설이 있으며 고령층을 대상으로 단기돌봄, 상시돌봄, 치매돌봄 서비스를 제공함
- (기타) 2021년 11월 5일 호주의 Aged Care 사업자인 Calvary Healthcare<sup>33)</sup>에 합병됨

○ Regis Healthcare는 재가노인 돌봄 서비스에 특화되어 있고 이 밖에도 다양하고 혁신적인 고령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

- (재가노인 돌봄) 호주 6개 지역에서 기본적인 가사도움을 제공하고 옵션 추가 시 재가 치매환자 돌봄, 재가노인 단기돌봄, 전문 의료 서비스, 물리치료, 작업치료<sup>34)</sup>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 (실버타운) 호주 8개 지역에서 실버타운을 운영하며 가사일부터 물리치료, 발마사지와 같은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며 테라피센터(Day Therapy Centres)를 통해 통합 건강서비스를 제공함
- (요양시설) 호주의 인구 밀집지역에서 64개의 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돌봄 서비스(단기돌봄, 치매돌봄, 완화치료돌봄, 전환치료돌봄)를 운영함

33) Calvary Healthcare는 1885년 설립된 비영리 가톨릭 의료기관으로 14개 공공 및 민간병원과 8,000명의 종업원 및 자원봉사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호주 전역에 72개의 요양시설·실버타운과 19개의 지역사회 기반 돌봄 서비스 센터를 운영함

34) 작업치료(Occupational therapy)란 질병, 질환, 장애를 가진 환자가 치료 목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반복 연습하는 치료를 의미함

- (기타) 매달 최소 하나 이상의 예술 수업, 바베큐파티, 운동 행사, 그룹 토론, 초청 강연과 같은 이벤트를 열어 가족이나 친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Aged Care의 운영과 관련하여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손상 외에도 다양한 배상책임 위험이 있으며 정부의 규제 변화로 요양사업 운영자의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음

- 고령자에 대한 학대 위험, 시설 이용자의 사생활 침해, 식중독 발생, 감염 통제 부주의, 적절한 처방약 제공 실패 등이 요양사업 운영자의 배상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
- 호주에서는 시설물 건축 및 유지 보수 기준과 근로자의 노동 강도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로 요양사업 운영자의 사업 운영에 영향을 끼침

○ Aged Care에 대한 위험관리와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① Ansvar, ② Aon, ③ Atlantic Aged Care Insurance Services, ④ Crucial Insurance, ⑤ EBM, ⑥ Marsh 등이 있음

- Ansvar는 6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비영리기관으로 Aged Care 분야에서 배상책임보험, 재물보험,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고용분쟁보험,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솔루션을 제공함
  - 이 밖에도 고객 스스로 잠재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워크샵, 첨단 소프트웨어 등을 제공함
- Aon은 보험 중개인으로 요양산업 규제환경 변화, 시설 이용자의 수요 변화, 사이버리스크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노출 위험, 거주자의 건강기록 정보 유출 등에 대비한 위험 관리 교육을 제공함
- Atlantic Aged Care Insurance Services는 요양산업 관련 비영리기관의 보험 수요를 충족하고자 1990년대부터 Aged Care에 대한 보험을 제공해왔고 고객의 위험 관리 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음
  - 동 회사는 로펌과 파트너십을 통해 요양사업 운영자에게 2시간의 무료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함
- Crucial Insurance는 기업성보험 중개인으로 Aged Care 사업 운영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보험, 기업 휴지보험, 배상책임보험 등을 제공함
  - 동 회사는 거주자의 낙상사고, 운동이나 수영장 이용 등에 따른 각종 사고,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보장하는 손해배상책임보험을 제공함
  - 또한 화재 등의 피해로 인해 시설 이용자가 타 건물로 이주해야 할 경우, 재건축으로 인한 거주자 이전 문제, 시설물 이용 중단에 따른 위험을 보장하는 기업휴지보험을 제공함
  - 요양시설 근무자가 악물관리나 돌봄 서비스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거주자에게 피해를 끼칠 경우 이 같은 위험을 보상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한 사이버보험도 제공함
- EBM은 보험중개인으로 요양원, 돌봄인, 요양시설 운영자 등에 대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
  - (요양원에 대한 보험) 기업휴지보험, 배상책임보험, 산재보험, 재물보험, 신원보증보험, 기계 및 전자 장치 오류에 따른 보험, 자원봉사자 개인 장해에 대한 보험 등을 제공함

- (돌봄인에 대한 보험) 돌봄 종사자가 간병 서비스 제공 중 상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하는 손해배상책임보험을 제공함
- (요양시설 운영자에 대한 보험)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자원봉사자 개인상해보험, 배상책임보험, 종업원 상해보험, 신원보증보험 등을 제공함
- (돌봄인 대한 자동차보험) 돌봄인의 요구사항(장거리 운전, 시내운전 등)이나 자동차 유형에 따라 적합한 보험상품을 제안함
- Marsh는 기업휴지, 데이터 손실 및 사이버 위험, 기술 오류로 인한 작업 중단 리스크뿐만 아니라 요양시설 운영 기준에 대한 법적 변화, 이사회 구성과 거버넌스 구조 등 Aged Care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대응책과 보험솔루션을 제공함
- 이 밖에도 Aged Care 산업 관련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인으로 Gow-gates와 Business Insurance Specialist가 있음

○ 호주 정부는 Aged Care 사업 운영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 같은 규제 변화에 대한 보험업계의 대응이 필요한 실정임<sup>35)</sup>

- 호주는 2018년 왕립위원회(Royal Commission)를 통해 요양시설의 품질과 안전 기준을 조사하였고 거주자 학대혐의, 방치 문제, 열악한 식품 품질, 근로자 수 부족 등의 문제점을 제기함
  - 왕립위원회의 발표 이후 호주 Aged Care 주요 사업자인 Aveo Healthcare, Estia Health, Japara Healthcare, Regis Healthcare의 매출이 7~16% 하락하였음
- 호주 정부는 재가노인 돌봄 서비스 중심의 재정 지원을 늘리고 있으며, 2022년 동 분야에 대한 지원을 2019년 대비 1/3 정도 확대할 것을 목표로 있음<sup>36)</sup>
  - 호주 정부는 2050년경 약 350만 명의 호주인이 Aged Care 서비스의 혜택을 받게 되고 이 중 80% 이상이 재가노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 향후 Aged Care 보험서비스 제공 기업은 요양시설 입소자의 연령 확대와 재가노인 돌봄 서비스 수요 변화에 맞는 보험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필요함
  - 85세 이상의 고령층은 전문 요양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양시설 운영자는 이들 환자에 집중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보험서비스 또한 고령 환자 지원을 위한 종업원 관리와 기타 자본 지출 리스크 등을 통제해야 함

35) <https://www.intelligentinvestor.com.au/investment-news/the-biggest-threat-to-aged-care-providers-is-the-family-home/144674>

36) <https://www.intelligentinvestor.com.au/investment-news/the-biggest-threat-to-aged-care-providers-is-the-family-home/144674>

- 호주 보험회사는 민영건강보험을 통해 고령자에 대한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령층은 ‘골드형’ 상품에 가입하여 고가의 의료 서비스를 보장받고 있음
  - 호주 정부는 2004년 제정된 연령차별금지법(Age Discrimination Act 2004)을 통해 민영건강보험회사가 고령의 피부양자 건강을 보장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 민영건강보험은 임의가입 방식이나 65세 이상 인구 중 민영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50.1% 정도라는 약 165만 명 정도임<sup>37)</sup>
  - 호주 고령층은 민영건강보험 상품 중 보장범위가 높은 ‘골드형’ 상품에 가입하여 고가의 진료(백내장, 무릎, 고관절 교체 포함)에 대한 보장을 받고 있음
    - 민영건강보험 상품은 보장범위와 비용에 따라 ① 기본형(Basic), ② 브론즈형(Bronze), ③ 실버형(Silver), ④ 골드형(Gold)으로 구분되며 기본형의 경우 보장범위가 제한적이고 골드형은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모든 병원 내 진료·치료에 대한 보장이 가능함
- 현재 호주 민영건강보험은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에 따른 보험산업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 호주 민영건강보험은 지역사회 기반으로 위험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젊은층의 가입이 줄고 노령인구의 가입이 증가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
    - 민영건강보험은 자동차 혹은 생명보험 상품과 달리 리스크 기반이 아닌 지역사회 기반으로 보험료가 정해지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도 동일한 보험료를 부담하는 구조임<sup>38)</sup>
  - 호주의 민영건강보험 주 이용자는 의료 서비스 이용이 많은 60~70대 고령자로, 이들은 주로 만성질환자이거나 인공관절 수술이나 심장 수술 등의 진료 이용이 많기 때문에 의료비 지출이 높음<sup>39)</sup>
    - 최근 6년간 호주 민영건강보험의 민간병원보험(Private hospital cover) 가입자 수 누적변화를 보면 보험료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음<sup>40)</sup>
    -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 정도인데 반해 고령인구가 주·야간 병원에 입원하는 비율은 40%를 차지하고 있음
  - 호주의 젊은 연령층은 민영건강보험이 비용 부담이 높고 보장내용이 불만족스럽다는 이유로 민영건강보험에 대한 낮은 만족도를 보이며 최근 가입자 수가 하락하고 있음<sup>41)</sup>

37) <https://www.privatehealthcareaustralia.org.au/have-you-got-private-healthcare/why-private-health-insurance/ageing-australia/>

38) 이는 보험가입자의 기저질환이나 흡연유무와 같은 위험 특성 즉, 연령, 건강상태, 소득수준 등에 관계없이 지역공동체 위험률(communitary ratings)을 적용함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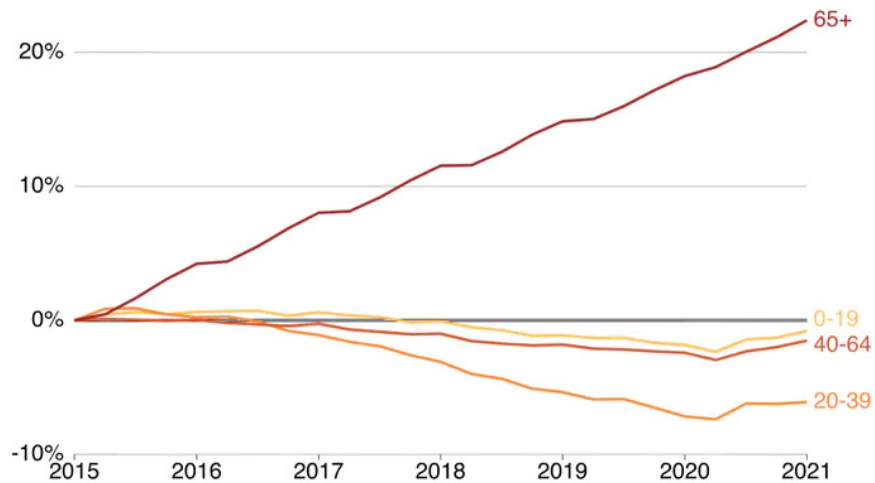
39) 예를 들면 호주에서 무릎 및 고관절 교체의 약 65%가 65세 이상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음

40) <https://theconversation.com/4-ways-to-fix-private-health-insurance-so-it-can-sustain-a-growing-ageing-population-161171>

41) <https://www.theguardian.com/australia-news/2021/may/20/australias-private-health-insurance-industry-in-a-death-spiral-report-says>

- 현재 호주 정부는 민영보험의 가입 유인을 높이는 각종 정책을 실행하고 있으며 민영건강 보험회사는 재무건정성 관리를 위해 보험금 누수 문제에 집중하고 있음
  - 호주 민영건강 보험회사는 심장 이식 장치, 고관절 및 무릎 교체 관련 의료보철물 부문에서 보험금 누수 문제를 개혁하기 위해 호주 정부와 협조하여 의료보철물 급여 목록에 대한 개혁을 추진 중에 있음

〈그림 5〉 호주 민간병원보험(Private hospital cover)의 연령별 가입자 수 누적변화율



자료: <https://theconversation.com/4-ways-to-fix-private-health-insurance-so-it-can-sustain-a-growing-ageing-population-161171>

## 도서회원 가입안내

| 회원       | 연회비       | 제공자료                                                                                                                                                                                                                                                       |                   |
|----------|-----------|------------------------------------------------------------------------------------------------------------------------------------------------------------------------------------------------------------------------------------------------------------|-------------------|
| 법인<br>회원 | ₩300,000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보고서</li> <li>- 기타보고서</li> <li>- 연속간행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금융연구</li> <li>· 보험동향</li> <li>· 해외 보험동향</li> <li>· KOREA INSURANCE INDUSTRY</li> </ul> </li> </ul> | 영문 연차보고서<br>추가 제공 |
| 특별<br>회원 | ₩150,000원 |                                                                                                                                                                                                                                                            |                   |
| 개인<br>회원 | ₩150,000원 |                                                                                                                                                                                                                                                            |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 가입 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3775-9113 | 팩스 : (02)3775-9102



### 회비 납입 방법

무통장입금

- 계좌번호 : 국민은행 (400401 - 01 - 125198) | 예금주: 보험연구원



### 자료 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자료실(02-3775-9113 | lsy@kiri.or.kr)



해외 보험동향 08호 [ 2021년 겨울호 ]

발 행 일 2022년 1월  
발 행 인 안 철 경  
발 행 처 보험연구원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문 의 보험연구원 글로벌보험센터(02-3775-9076)  
인 쇄 소 경성문화사

ISSN 2714-0482

정가 10,000원

